0 0

원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중기업 경영관리

2023/3/8 통권 1613호

「<u>2022 사업연도 귀속</u> 변인결사·외계예설과 변위세 시고서 : 세무 조정비산서 작성시례 최종점검표(Checklist) I

✓ 경영관리 임직원 재경컨설팅

- •법인세 신고 및 조정계산서 작성관련 공통점검사항
 - 일반 절차 및 세무신고 관련서류 범위
 - 세무계산상 손금인정받기 위해 결산 재무제표에 반영(결산조정)해야 하는 사항
- 2023년 법인세 신고서 작성시 2022년과 달라진 핵심요약
- •2023. 3월의 법인세 신고분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 사항

✓조세전문가의 세무컨설팅

- •2022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세무조정 계산서 작성사례 해설
-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및 가산세관련 보완서류(법인세법 제116조)
-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작성사례 (사업연도 2022. 1. 1~12. 31)
-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익금 조정 개요
- 조정사례와 구체적 서식작성실무
-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신고서
- 2022년 12월말 세무결산환율표

재경팀 업무지침

- ① 2022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납세와 각종 재무보고서류의 작성 ·세무조정신고·납부절차 관계도 개요
- ② 2022년 사업연도 법인결산에서 당장의 법인세절세와 나중으로 과세 이연하기 위한 각종 점검내용 요약

Flowchart of Accounting report and corporation tax return(see page 1)

기업의 회계결산 완료(1월~2월중) 이사의 재무제표작 성과 이사회승인

회계법인과 감사인의 외감법 적용 회계감사(2~3월 중) 상법상 내부감사의 검토와 감사보고

결산확정 (늦어도 3월중까지)

법인세법상의 재무상태 세무조정 표 신문공고 의무규정 은 삭제

> 과세표준신고와 세액납부 (신고는 매년 3월 31일까지) 분납(1개월): 4월 30일까지 (중소기업은 5월 31일까지)

회계사의 회계 감사 보고서 제출 마감

- IFRS 연결재무 제표 제출
- 회계감사인선임 계약(2.14.까지)
- 감사계약체결 금감원 · 한공회 보고(2주일 이내 인 2. 28.까지) 단, 3.15.까지 계약보고시 지정안함

· 주주총회, 사원총회의 결산보고서 승인(상법절차에 의함)

- · 200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재무상 태표 신문공고 의무 없으며, 가산세 등 불이익도 없음(그 러나 상법이나 정관에 재무상태표의 공시의무규정은 있 으므로 상법상으로는 재무상태표 공시가 원칙임 : 신문 공고나 회사 홈페이지 전자공시 등 여러방법 활용가능)
- ·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즉 3월 31일까지임)
- ① 재무상태표
- ② 포괄손익계산서
- ③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④ 세무조정계산서
- 필수첨부서류 (①, ②, ③, ④ 어느 하나라도

재무제표는 비교식이 원칙임.

- 빠지면 무신고가산세 부과 가능)
- (회계사 · 세무사의 외부세무조정서명이 필수적임) ⑤ 기타의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외감대상)

누락, 오류, 탈루 사항은 회사가 추후 수정 가능함. (세무서가 보정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 · 증액수정신고: 관할세무서장의 경정통지전까지는(언제나 가능)
- · 감액경정청구: 적법신고기한 경과후 3년내(2006년분부터)
- : 종전은 2년내이었으나 2006년분부터 3년으로 연장되어 납세자 편익이 높아짐

(안세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제공)

안세회계법인 02 - 829 - 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타

과소신고

이었다면

과다신고

이었다면

인건조세정보 02 - 829 - 757

3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613호 / 주간 10호

2023. 03. 08. (수)

· 발 행 인 : 이 윤 전

· 제 작 : ㈜ 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 02) 829-7575

. БАХ : 02) 718—8565



차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02) 829 - 7575 팩스: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051) 642 - 3988 팩스: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053) 654 - 9761 팩스: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010) 3409 - 2427 팩스: 042) 526 - 1686

• 수워 안산

전화: 010) 5255 - 6116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 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①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①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23 법인세 신고인내(국세청 자료)

긴 급 시 사 해 설	세액공제·감면 및 준비금 등 각종 법인세 절세혜택항목 점검표	3
세무컨설팅 ㅣ	법인세 신고 및 조정계산서 작성관련 공통점검사항	8
세무컨설팅 ॥	2022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사례 해설	24
1.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및 가산세관련 보완서류	25
2. 수입금액조정당	명세서 작성사례	27
3.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익금조정 개요	29
4. 퇴직급여충당	금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30
5. 퇴직연금 부담	금 등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방법	32
6. 퇴직연금 부담	금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33
7. 대손충당금조경	정명세서 작성사례	35
8. 국고보조금 등	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조정	37
9. 조세특례제한	법상의 준비금	37
10. 업무무관부동	산 등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38
11. 감가상각비조	조정명세서	41
12. K-IFRS를 적·	용하는 법인의 감가상각 특례	44
13. 지정기부금 결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45
14. 접대비 조정당	명세서 작성사례	47
21000	h 관련비용 세무조정 사례	51
0012	소득처분방법과 구체적 사례	53
17. 소득금액조정		55
18. 최저한세 조경	3 "2 1 "	56
	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조정계산서 작성사례	56
	I일자 법인결산과 세무신고를 위한	60
	회계세무환율(재정환율)	
ZI. 사본금과 석단	립금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61

부가세영세율과표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액 평가의 기준·재정 환율 / 서울외국환중개(주)

2023 · 03 · 08 www.eAn\$e.com 1



세액공제·감면 및 준비금 등 각종 법인세 절세혜택항목 점검표

1. **법인세 면제 및 감면세액 계산방법** : 매년 세액 면제 · 감면 · 공제신청서 제출 필수

구 분	면제·감면 소득의 범위	면제 · 감면의 방법			
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 §6)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서 창업하는 중소기업('18.5.29. 이후 수도권 내 창업한 청년창업 기업 포함),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로 지정받은 법인 ①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으로서 에너지신기술중소 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 '18.5.29. 이후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업: 5년간 100% * '18.5.28. 이전 청년창업 중소기업: 최초로 소득이생한 연도와 그후 2년간 75%, 그 이후 2년 50% * '18.1.1. 이후 창업한 대상기업 중 신성장 서비스업위기업: 최초로 세액을 감면받는 연도와 그후 2만 75%, 그 이후 2년 50% * '18.5.29 이후 차업한 수임금액 4천800만원 이하			
② 중소기업 등 특별세	-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			ムス	7).11 0
액	4. 4. 5.4.1.2.5.1	구분	소재지	업종	감면율
감면 (조특법 § 7)			ムヒコ	제조업 등	20
* 2005. 1. 1. 이후 최초			수도권	도소, 의료업 통관대리 등	10
개시사업연도분부터 본점		소기업		장산내다 등 제조업 등	30
기준에서 사업장기준으로			수도권 외	제조립 등 도소, 의료업	10
변경(본점이 수도권 안에			十五日 円	통관대리 등	15
있는 경우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지식기반산업	10
수도권안에 있는 것으로 간주)				제조업 등	15
(行)		중기업	수도권 외	도소, 의료업	5
			126-1	통관대리 등	7.5
			U10)	1 32 11 10	10
		(감면한도) 1 * 사시그로		원-1인당*5백만원	
		- 소기업		면 110 기계인전	
	글글카파도에서 글경인 격파인데 소득		20% 수도권 외 : 1	5%	
	* '22.1.1.~ '23.12.31.까지		·도권 내 : 1		
③ 기술이전에 대한 과 세특례(조특법 § 12	-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등		에 대한 법인		
①,③)	는 소득 -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을 대여함으 로서 발생하는 소득	- 해당소득	에 대한 법인	L세의 25%	
④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		- 소득 발/	생 후 3년간	100%, 그 후 2	년간 50%
면(조특법 §12의2)					

⑤ 공공차관도입에 대한	- 공공차관의 도입과 관련하여 외국인	_ 고고키고청야세 메리 가田
법인세 감면 (조특법 § 20)	- 등 등 사원의 도립와 된단하여 되독년 에게 지급되는 기술 또는 용역의 대 가	
⑥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면제 (조특법 § 21)	 국가 등이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표 시채권의 이자 등 국가 등이 국외에서 발행한 유기증권 을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100% 면제
⑦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조특법 §62)	 이전공공기관이 본사를 혁신도시 또는 세종시로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성장관리권역에 본사가 소재하는 이전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간 균등액 이상을 환입 -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 연도와 그 후 2년은 100%, 그 다음 2년은 50% 감면
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등(조특법§63)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중소기업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이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 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함에 따른 이전 후 공장소득 * 본사가함께 있는 경우 같이 이전	-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 도와 그후 6년(4년)은 100%, 그 다음 3 년(2년)은 50% 감면
9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 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조특법 \$ 63의2)	무점포 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영 위하는 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본사 이전에 따른 소득	-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 도와 그후 6년(4년)은 100%, 그 다음 3 년(2년)은 50% 감면
(10) 농광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 § 64)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나주일반, 혁신·김제지평선·장흥바이오 식품·북평국가, 일반·강진·정읍 첨단과학·동함평·세풍일반(1단계)·담양일반·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중소 기업	년간 → 법인세 50% 감면
①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 인세 면제 (조특법 § 66)	- 영농조합법인 * 2014.1.1. 개정시 조합원당 수입금액 6 억원을 초과하는 작물재배업 소득 분을 과세로 전환(2015.1.1.이후 개시 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 -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1,200 만원 × 조합원수× 사업연도월수 한도)
①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조특법 § 67)	- 영어조합법인	-어로어업소득(3,000만원 × 조합원수× ' 사업연도월수 한도) - 어로어업소득외의 소득 중(1,200만원 × 조합원수× 사업연도월수 한도)
[3] 농업회사 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조특법 § 68)	 농업회사법인 * 2014.1.1. 개정시 수입금액 50억원을 초 과하는 작물재배업 소득분을 과세로 전 환(2015.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 부터 적용) 	-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 - 기타 작물재배업 소득: 50억 원 한도 - 부대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최초로 소 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후 4년간 법인세 50%감면
(4)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 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 § 85의6)	사회적기업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후 2 년은 100%, 그 다음 2년은 50% 감면 (1억원+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상시근로 자 수 × 2,000만원 한도) * 최저한세 적용 제외

 $2023 \cdot 03 \cdot 08$ www.eAnSe.com 3

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96)	- 내국인이 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 대한 경우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 득	
(6)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 99의9)	- 고용 또는 산업 위기지역 내 창업 하는 기업으로 지정기간 내 창업기 업	- 5년간 100% 감면 그 이후 2년간 50% 감면 면 - 중견·대기업은 다음 한도 : 투자누계액 50%+상시근로자수×1,500만원(청년 등 2,000만원)
⑦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 §104의24)	- 내국법인이 국외(개성공업지구 포함)에서 2년 이상 운영한 사업장을 국내(수도권 밖)로 이전하여 창업 하거나 사업장 신설하고 국외 사업 과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등 일정요 건 충족	① 완전복귀 -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다음 4개 과세연도 →법인세: 100% 감면 - 다음 2개 과세연도 → 법인세: 50% 감면 ② 부분복귀 - (비수도권) 5년간 100% 2년간 50% - (수도권*) 3년간 100% 2년간 5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18 제주첨단과학 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 § 121의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의 생물산업 · 정보통신산업, 정보통신 서비스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법인세 : 100% 감면
⑤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 §121의9)	①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해당 구역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①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의 해당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 법인세 : 100% 감면
②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 §121의17)	①기업도시개발구역(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박람회장 조성사업 구역)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시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①기업도시개발사업(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해양박람회 특구) 시행자의 해당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 법인세: 100% 감면 다음 2년내 종료 과세연도 → 법인세: 50% 감면
②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 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 §121조의2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 그 지구에서 사업 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투자 금액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금용중심지 창업기업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 §121의21)	- 금융중심지(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내에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여 해당 구역안의 사업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10. 5. 14. 이후 최초로 창업하거나사업장을 신설하는 법인부터 적용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 법인세: 100% 감면 다음 2년내 종료 과세연도 → 법인세: 50% 감면

②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 §121의22)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보건의료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경 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이 식품산업 등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 법인세: 100% 감면 다음 2년내 종료 과세연도 → 법인세: 50% 감면
② 외국법인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의 법인세 감면 (조특법 §141의2)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조하거나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에 소재하는 물류시설에 보관 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면제

^{* 2019.1.1.} 이후 지역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입주하는 법인은 다음 금액을 한도로 하여 법인세 감면 (대상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제주 투자진흥지구·첨단과학기술단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식 품클러스터

- 투자누계액 50% + 상시 근로자 수 × 1,500만원(청년 및 서비스업 근로자 2,000만원)
- 100% 감면기간(최저한세 적용 제외), 그 외 감면기간(최저한세 적용) : 2020.1.1. 이후 개시하는 괴세연도분부터 적용

2.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어느 법인이나 쉽게 적용가능한 것 발췌함)

구 분	관련규정	공 제 금 내 역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조특법 § 7의4	○중견·중소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견·중소기업에 구매대금 지
세액공제		급한 경우
		- 지급기한 15일내 지급금액 × 0.5%
		- 지급기한 16일~30일내 지급금액 × 0.3%
		- 지급기한 31일~60일내 지급금액 × 0.15% * 세액공제 한도: 법인세의 1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조특법	에 액등에 인도·합인에의 10% ○출연금액×10%
위한 출연금 세액공제	\$8의3	- 출연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조특법 § 10	일 반 법 인 중 소 기 업
세액공제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연구개발비 신성장동력연구개발, 원천기술연구개발
" 10 "		× 최대 30% [20% + (매출액 ×최대 40%[30%+(매출액 대비 신성
		대비 신성상 K&D비중 × 3배]
		고스틱(3/3 중간기급는 의대
		40%(25%+α)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최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최대 50%
		40% [30%+ (수입금액 대비 국 [40%+(수입금액 대비 국가전략기술]
		가전략기술 R&D 비중 × 3배)] R&D 비중 × 3배)]
		위 해당·선택않은 경우 위 해당·선택않은 경우
		①·②중 많은 것 선택 ①·②중 많은 것 선택 ①직전년도 발생액 초과금액 고기고려도 바세에 즐기고에 X500
		×25% 발생액 조과금액×50%
		②당해연도 R&D비용 × 기본 ②당해연도 R&D비용×25%
		0% + 최대 2%(매출액 대비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공제율 단계적 인하
		R&D 비중의 1/2)] - 중소기업 졸업이후(유예기간 포함)
		3년간 15%, 그 이후 2년간 10% ※ 중견기업 공제율 신설 주거기어(조트여 & 9세)
		※ 중견기업 공제율 신설 ('13. 1. 1. 이후 개시 과세연도)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① · ②즛 많은 것 선택 의 조되 기어의 조스키어 어조
		①직전 2년 연평균 발생액 초과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충족
		ㅁㅋ^ 4070 4 직접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 미만
		금액× 40% ②당해연도 R&D비용×8% 4.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 미만

2023 · 03 · 08 www.eAnSe.com 5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 12의3	○ 피합병법인에게 지급한 양도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볍 § 12의4	○주식 등의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조특법 § 19	○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의 15%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법 § 24	 (공제대상) ① 사업용 유형자산(단, 토지·건물, 차량, 비품 등 제외), ②일부 유형자산(①제외)과 무형자산 (공제방식)기본공제(1/3/10%) +추가공제(직전 3년평균 투자액 초과분 × 3%) (신산업 지원 강화)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투자는 기본공제 2%p우대 (국가전략기술 지원) 신성장·원천기술 기본공제 대비 + 3~4%p상향, 추가공제 1%p 우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조특법 § 25의6	○ 영상콘텐츠 제작금액×3%(중견 기업 7%, 중소기업 10%) * 공제시기: 방송영화상영이 되는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 29의3	○ 중소 · 중견기업이 고용 후 2년간 지급 인건비×30%(중견 15%) * 2015.1.1. 이후 재고용하는 분부터 적용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조특법 § 29의3	○ 중소·중견기업이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남성포함)에게 지급한 인건비 × 30%(중견 15%) * 아이 1명당 1번만 적용,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는 경우 적용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 29의4	○ 직전 3년 임금증가율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은 20%) ○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전년대비 임금증가액의 합 계×5%(중견기업 10%, 중소기업 20%)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만 적용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 29의7	-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아래 금액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조특법 § 30의2	○중소·중견기업이 2020. 6. 30. 현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시 1인당 1,000만원(중견기업 700만원)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 30의3	\circ 연간 임금감소 총액 $ imes$ 10% + 시간당 임금상승에 따른 임금 보 전액 $ imes$ 15%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특법 § 30의4	○전년대비 고용이 증가한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증가액 중 청년(15~29세), 경력단절여성 상시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의 100%, 청년 외 상시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의 50%(신성장서비스업 75%) * 고용이 감소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해도 세액공제 적용				
전자신고세액공제	조특법 § 104의8	○직접 신고: 2만원(납부할 세액 한도) ○세무대리인 대행: 세무대리인 본인의 소득·법인세 신고 월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동안 법인세를 신고 대행한 경우 납세자 1인당 2만원(부가가치세 신고대리에 따른 세액공제를 포함하여 300만원 한도, 세무·회계법인은 750만원 한도)				

기업의 운동경기부 운영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 104의22	○취약종목의 운동경기부 운영비용에 대해 창단후 3년간 10% 세액 공제 ○장애인 운동경기부 운영비용에 대한 창단 후 5년간 20% 세액공제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 104의25	○수요자에 한해 공급가액의 0.2% 세액공제 *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의 10% 한도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 104의30	○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운송비용 × 1% + 직전연도 대비 증가분 × 3% *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의 10% 한도
금사업자와 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 122의4	○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이 있는 경우 다음의 하나의 비율을 선택 하여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 * 전년 초과금액의 50% 또는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의 5% 에 상당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 126의6	○성실신고 확인 지급수수료 비용 × 60%(150만원 한도)

☞ 동일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중복되는 경우는 선택 적용 (조특법 §127 참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조특법§10) 적용시 유의사항

• R&D비용 세액공제의 증가분방식 산식 조정(2013.1.1. 개시 사업연도부터)

[당해연도 R&D비용 - 직전 3년 평균 R&D비용(13년) > 2년 평균(14년) > 직전연도 (15년 이후)] × 25%(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

다만, 소급 4년간 R&D비용이 발생하지 않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R&D비용이 소급 4년 평균 R&D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가분방식 적용 배제

-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는 2013.1.1.이후 개시 과세연도분부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배제됨(조특령§9①)
 - 종전에는 조특법§10의2에 열거된 출연금만 배제하였으나 정부 출연금으로 지출한 모든 연구개발비를 배제하는 것으로 개정
- 자체 연구개발비 중 세액공제 대상 전담연구원 인건비에서 제외되는 금액(조특령 별표 6)
 - 퇴직소득,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 2016.1.1.이후 개시 과세연도 분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연구관리직 원 인건비 세액공제 제외(조특령 별표 6)
- 위탁연구개발비 중 국내외 기업의 전담부서 등에 위탁·재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하여 적용됨(조특령 별표 6)

2023 · 03 · 08 www.eAnSe.com 7



법인세 신고 및 조정계산서 작성관련 공통점검사항

국세청 발간 2023년 법인세신고안내(세무조정신고서 작성요령) 서적에서 핵심사항일부를 발췌하고 일부는 안건조세정보의 발간물(저널·총서·법전)과 혼합 저술함. 법인세신고안내(국세청 발간) 전문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원문(총분량약 700쪽이며 전부분 클릭하여 참조, 출력 가능) 그대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편집부

1. 2022년 12월말 법인결산과 세무신고관련 변경·개정·핵심 검토 checklist

- 1. 일반 절차 및 세무신고 관련서류 범위[미제출시 가산세(해당액의 1% 등) 있음]
- ① 신고납부제출마감일: 2023년 3월 31일 금요일(회사자기조정이나 ① 회계사·세무사외부조정 모두)
- ②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 및 내부거래상계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 ③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액면가 3억 미만이라도, 보유주 시가합계액이 100억 이상인 경우라면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함)
- ④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함에 있어 부당한 신고위반 가산세는 40%세율로 중과세 적용하며(일반과소가 산세는 20%), 미납부관련 가산세 하루 10만분의 25(연 9.13%)적용
 - -회계사·세무사의 외부세무조정계산서 미첨부시 미신고 간주(법인세법 § 60, 동시행령 § 97⑦)
- ⑤ 주권상장·코스닥법인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주식변동상황만 주식양도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함.

2. 202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서 작성시 유의활 사항 요약(2023 주요 개정 내용 포함)

(1) 법인세율

과세표준	2023.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201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2022년 해당)	201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2010. 1. 1~2011. 12. 31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3,000억원 초과	24%	25%	22%	
200억원 초과	21%	22%	2270	22%
2억원~200억원 이하	19%	20%	20%	
2억원 이하	9%	10%	10%	10%

^{*} 조특법 §72의 조합법인 등은 2025. 12. 31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9% 적용 (다만,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20억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2% 적용)

○최저한세율

구 분	과세표준	2014년 이후	2013년	2011년~2012년	2010년	2009년
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 포함	7%	7%	7%	7%	8%

	유예기간 이후 1~3년차	8%	8%	8%	_	_
	유예기간 이후 4~5년차	9%	9%	9%	_	_
일반기업	100억원 이하	10%	10%	10%	10%	11%
	1천억원 이하	12%	12%	11%	11%	11%
	1천억원 초과	17%	16%	14%	14%	14%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2①)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적용제외(2014.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조특법 \$132(1)·(2))

(2) 공평과세

- ① 사업 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적용 보완(법법 § 50의2, 법법 § 113)
 - 사업 양수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이월결손금 공제 적용 보완
 - 특수관계인 간 양수도로서 양수자산이 사업양수일 현재 양도법인 자산의 70% 이상이면서 순자산의 90%이상인 경우, 양수 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은 양수법인의 기존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의 범위에서만 공제
 - * 2022. 1. 1. 이후 사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 ②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대상 법인 전환 기업 등 범위 보완(법법 § 60의2)
 - 사업 양수도를 통한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 회피 방지를 위해 적용대상 범위 보완
 - (적용대상 추가) 「소득세법」상 성실신고 확인 대상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 및 사업양도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전환한 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 및 사업양도를 통해 해당 사업을 인수하 여 영위중인 내국법인(법인 전환 후 3년이내)
 - * 2022. 1. 1. 이후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부터 적용

(3) 일자리 창출 지원

- ① 고용증대세액공제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29의7)
 - '22년까지 수도권 외 지역 청년·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 공제금액 100만원 한시 상향

구 분(만원)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十 군(인권)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청년.장애인 등	1,100	1,300	800	900	400	500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700	770	450	450	_	_

- 적용기한 '24.12.31.까지 3년 연장
- ② 정규직 전환 기업 세액공제 요건 신설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30의2)
 -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세액공제* 적용 요건을 조정하고 적용기한을 1 년 연장
 - * 전환인원 1인당 중소 1,000만원, 중견 700만원 세액공제
 - (요건) ① 2021.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022.1.1.~12.31.까지 정규직 전환
 - ②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 유지 (신설)

 $2023 \cdot 03 \cdot 08$ www.taxpark.com 9

^{*}지역특구(조특법§12의2 및 121의8, 9, 17, 20~22)에 대한 감면 적용시 100% 감면기간에는 최저한세 적용 제외, 50% 감면 기간에는 최저한세 적용('2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세무컨설팅 I

- * 특수관계인은 제외
- (적용기한) 2021.12.31. → 2022.12.31.
- (추징금액) 세액공제액
- ③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조특법 § 29의3)
 - 경력단절여성의 경력단절 인정기간 요건완화
 - (요건완화) 퇴직 후 3년 이상 15년이내 동종업종 취업→퇴직 후 2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 취업
 - * 2022. 1. 1. 이후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
- ④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사후관리 신설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30조의4, 조특령 §27조의 4)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사후관리규정 신설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 여타 고용지원세제와 동일하게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후 상시근로자 감소 시 잔여기간 공제 배제 및 공제세액 추가납부
- (4) 조세제도 합리화
- ①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기한 연장(법령 § 95(5))
 - 납세편의제고를 위해 신청기한 연장
 - (신청기한 연장)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
 - * 2022.2.15. 이후 신청 분부터 적용
- ②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하한 신설(법법 § 75)
 -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방식 합리화
 - (계산식) MAX [법인세 산출세액* × 5%, 수입금액 × 0.02%]
 -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
 - ** 202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 ③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에 따른 제도 보완(법령 \$ 3①(5), \$ 44의2③, \$ 111①(17))
 -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하고, 사업자 부담금이 전액 손금산입되는 퇴직연금제도에 중소퇴직연금기금제도를 추가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 금제도의 기금을 이자소득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
 - * 2022.4.14.(「근로퇴직급여보장법 법률 제18038호 시행일)부터 시행
- ④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퇴직급여 산정방식 명확화(법령 § 44②)
 - 직원·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중간정산시 근무연수는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
- ⑤ 연결법인간 자산양도로 이연된 양도손익 환입규정 정비(법령 § 120의18②)
 - 연결법인간 자산양도로 이연된 양도손익의 환입사유에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소각은 포함됨을 명확화 하고, 양도손익이연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
 - *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⑥ 공사부담금 투자세액공제 배제(조특법 § 127)
 - 공사부담금(전기사업, 도시가스사업 등의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특정시설에 대한 투자

를 목적으로 해당 시설의 수요자 또는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제공받는 금액)을 제공받아 투자한 금 액은 투자세액공제 적용 배제

- * 2022.1.1.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
- (7)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보완(조특법 §100의32)
 - (차기환류적립금) 설정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 (이월결손금) 기업소득 차감항목인 이월결손금을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60% 한도 적용, 법인세법 § 13①)"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 가능한 결손금(60% 한도 미적용)"으로 개정
 - (임금증가액) 기업소득 차감항목인 임금증가액 적용대상 근로자에서 제외하는 연간 총급여액이 8천 만원 이상인 상시근로자 기준 적용시 근무기간 1년 미만인 경우 총급여를 연단위로 환산하여 판단
 - * 2021.12.31. 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부터 적용
 - * 2022.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⑧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요건 정비(조특법 §63의2)
 - 세액감면 요건에 최소 투자금액 및 근무인원 기준 요건 추가
- (4)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6)
 - 생계형 창업 기준을 완화하고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 (요건) 수입금액 연간 4.800만원 이하 → 8.000만원 이하
 - (적용기한) 2021.12.31. → 2024.12.31.
- ②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지원 확대(조특법 § 7의4)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공제율 상향 등 지원 확대

종 전			개 정				
■(요건) ◐과❷ 모두 충족		•	■ (요건 단순화) 어음결제 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하				
❶ 현금성 결제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			지 않을 것				
어음결제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 (공제율)공제율 상향 및 구간 세분화				
■(공제율)	■(공제율)			공제율			
지급기일	공제율		15일 이내 지급	0.5%			
15일 이내 지급	15일 이내 지급 0.2%		16~30일 지급	0.3%			
16~60일 지급	16~60일 지급 0.1%		31~60일 지급	0.15%			

- * 2022.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③ 성과공유 중소기업과세특례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령 § 17)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여성과급 세제지원 요건 완화 및 중소기업 공제율 상향
 - (요건완화)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 → 삭제
 - (공제율 상향) 경영성과급의 10% →15% 세액공제
 - (적용기한) 2021.12.31. → 2024.12.31.
 - * 2022. 1. 1. 이후 중소기업이 지급한 경영성과급부터 적용
- (5) 신성장산업 등 육성
- ① 탄소중립 실현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 지원(조특령 별표7)

●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종 전

■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 13대 분야 260개 기술 (추가) ③ '탄소중립' 분야 신설 - (탄소중립)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수소, 신 재생에너지, 산업공정, 에너지 효율·수송 등 부문 의 탄소저감 기술 48개(신규 19, 확대 4)
- 12대 분야 235개 기술 ①~⑫ ■ (공제율) 지급기일 공제율 15일 이내 지급 0.2% 16~60일 지급 0.1%	CCUS(7) 연소전후 CO2 포집기술 등 수소(8) 그린·블루수소 생산기술 등 신재생E(12) 바이오매스 에너지 기술 등 산업공정(11) 수소환원제철 기술 등 E효율·수송(10) 히트펌프 효율향상 기술 등 - (기타) 미래차·바이오·희소금속·자원순환 등 기술 8개 * 고효율 하이브리드 자동차시스템, 바이오 파운드리 기술, 중희토 저감 영구자석 생산기술, 폐플라스틱 물리적 재활용기술 등 ■ 개별 대상기술 유효기한 설정: 선정일부터 최대 3년

개 정

- * 20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② 기술이전·대여소득 세액감면 적용대상 확대(조특법§12)
 - 기술이전·대여소득 세액감면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2년 연장
 - (기술대여소득 감면 적용대상) 중소기업 → 중소·중견기업
 - (적용기한) 2021.12.31. → 2024.12.31.
 - * 20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③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확대(조특령 § 21)
 -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중소·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지식재산 추가
 - (적용대상) 중소·중견기업이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¹⁾(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제외)
 - 1)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개발(위탁·공동연구 포함)하여 최초로 설정등록한 것
 - * 2022.2.15. 이후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
- (6) OECD 등 국제기준 반영
- ① 특정외국법인(CFC)를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관리 강화(국조법§27)
 - 세부담률 판정기준 조정 및 신탁을 이용한 해외소득 이전 방지를 위해 특정외국법인의 범위 확대
 - (기존) 15%이하 → (개정)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25%)의 70% 이하
 - 법인과세 신탁*을 특정외국법인의 범위에 추가
 - * 「신탁법」에 따른 목적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
 - ** 20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② 과소자본세제의 업종별 자산부채 배분 방법 명확화(국조령 § 50)
 - 업종별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 등의 배분 방법 명확화
 - **12 안세재경저널 · 공인회계사 조세저널** (구독신청 · 상담 829-7575)

- 어느 한 업종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업종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배분
- * 법인세법 시행령§94②2호(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중 배분비용)를 준용
- **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③ 소득대비 과다이자의 조정소득금액 범위 및 손금불산입 순서 구체화(국조령 § 54③)
 - 조정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 '0'으로 간주
 - (손금불산입 순서) ●서로 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경우 : 최근 차입일 우선
 - (손금불산입 순서) ❷이자율·차입일 모두 같은 경우 : 차입금 규모 비율에 따라 안분
 - *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7) 기타

- ①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신설(법법 § 74의2)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의 성실한 제출유도를 위해 가산세 신설
 - (미제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신고액) × 1%
 - (불성실 제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신고액) 중 명세서상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금액 \times 1%
 - * 202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 ②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협의매수·수용 토지의 요건 강화(법령 § 92의11③)
 - 투기 목적의 토지 취득 방지를 위해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협의매수·수용 토지의 범위를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에서 5년 이전인 토지로 변경(2년→5년)
- ③ 성실신고 확인제 등 적용대상 소규모법인 범위 확대(법령 § 42②)
 -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대상,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한도 축소 대상 및 접대비 손금한도 축소 대상인 소규모 법인의 범위 확대

종 전	개 정
□ 성실신고 확인제 대상 소규모 법인 : 아래의 요건을	□ 대상 법인 범위 확대
모두 갖춘 법인	
① 지배주주등*이 50% 초과 출자	① (좌동)
* 지분율 1% 이상 +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최대지분율	
② 주된 사업이 부동산임대업인 경우 또는 부동산임대·	② 매출액 비중 기준 하향 조정 : 70%→50%
이자·배당소득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70% 이상	
③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③ (좌동)

- * 202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④ 비수익사업의 대상 추가(법령§3①)
 - 선급검사를 통한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선급검사용역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 * 202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⑤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변경(국기령 § 27의4)
 - 납부자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을 1일 0.025%에서 0.022%로 인하 * 2022, 2, 15,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 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인정범위 확대(법령 § 19)
 - 기업의 우수인력 유치 및 근로자 복지 지원을 위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산입 인정 대상에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을 추가

- * 2022. 2. 15. 이후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 ⑦ 기부금 대상 시설 추가(법령 § 39①)
 - 기부 활성화 지원을 위해 10% 손금산입 한도 기부금 대상 시설에「청소년복지지원법」§31에 따른 청소년 복지시설을 추가
 - * 202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⑧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 시 적격합병 요건 구체화(법령 § 80의2)
 - 비상장 중소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스팩 소멸합병에 대한 과세이연특례 도입
 - 스팩은 1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 배제, 피합병법인인 스팩의 주주는 주식보유요건 배제, 스팩과 합병한 합병법인은 승계한 사업지속 요건 배제
 - * 2022. 1. 1. 이후 합병하는 경우부터 적용
- ⑨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 시 세액감면 확대 등(조특법 § 104의24)
 - 국내복귀 기한요건 완화
 - * 해외사업장 양도·폐쇄·축소 후 1년 내 국내 신·증설 → 2년 내 국내 신·증설
 - 국내 창업 및 사업장 신설을 통한 복귀 시 감면대상 소득 명확화
 - 국내창업 및 국내사업장 신설 시

- * 국내사업장이 없는 창업의 경우 창업 당시 해외사업장 매출액을 감소액으로 간주
- ⑩ 해운기업 과세특례("톤세") 관련 사용률 신고기준 개선 보완(조특령 § 104의7)
 - 공동운항선박에 대한 사용률 기준 개선
 - 용선 또는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은 실제 적재량을 해당 선박의 적재능력¹⁾으로 나눈 비율
 - 1) 선박의 최대 적재량 또는 컨테이너선은 설계적재능력의 75%
 - * 2022.2.15.전에 용선(조특령 104조7 제1항에 따라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을 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경우로서 22.2.15. 이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적용
- ⑪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 28의3)
 - 중소·중견기업 등의 사업용 고정자산,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해 기준내용연수의 50~75%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로 가속상각 특례를 적용하였으나, 이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을 '21.12.31.로종료
- 3. 법인세 신고시 참고할 해석·판례
- 가. 특수관계자 거래
-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1605, 2022. 2. 10.
 - 증여인이 주식을 직접 양도할 경우 의제배당에 따른 통상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 적으로 중간에 수증인들을 개재시킨 것이고, 이는 실질적으로 증여인이 주식발행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후 출자금을 회수한 금전으로 주식발행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거래를 가장한 것이므로 거 래의 실질에 따라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여야 함
-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0241, 2022, 10, 27,

원고가 대표이사로부터 특허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특허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수대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과 상계한 건과 관련하여 쟁점특허권은 그 내용상 원고 내 설비 및 자원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오직 대표이사의 아이디어만으로 완성된 발명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앞서 본 원고 내 기술인력 및 설비상황 등을 더하여 볼 때 대표자 개인이 단독으로 발명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0, 2022. 8. 24.
 - 특수관계인간 거래로서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나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결산시 계상한 기간경과 이자('미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50, 2022. 8. 31.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점인 '그 행위당시'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5, 2022. 10. 20. 3년간 계속 결손인 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로서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는 최종시세가액(할증하지 않음)임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52, 2021. 11. 30. 내국법인이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제기부금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902, 2021. 11. 1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중소 기업 상생협력을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협력중소기업에 금전의 저리 대부를 지원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514, 2021. 11. 4. 내국법인이 양도한 유형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그 감정가액이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음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283, 2021. 10. 15. 내국법인이 손해배상채권 성격으로 계상한 미수금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 대법원2016두54213, 2019. 5. 30. 원고회사와 원고회사의 임원들인 이 사건 이사들과 함께 AA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일괄 양도하면서 양도가 액을 주식수 비율대로 나누어 가진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과 관련없는 이 사건 이사들 양도부분은 원고회사가

받았어야 할 경영권 프리미엄 중 일부를 분여한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

나. 업무용승용차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213, 2021. 9. 29.
 -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파견직원에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업무용 승용차를 제공하는 경우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제27조의2에 따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해당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서 시부인 계산 대상에 해당함
-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95, 2020. 10. 19.

세무컨설팅 I

을 하는 것임

임차하여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 이 월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435, 2020. 6. 12.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면서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법인세법」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64조제3항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기 전 같은 법시행령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을 기준으로 해당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금액을 먼저 계산한 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감가상각비를 기준으로 일시상각충당금 환입에 대한 세무조정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698, 2017. 9. 26.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자동차 대여사업자와 체결한 후 월 임차료를 안분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제1호 및 같 은 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납부한 임차료에 업무사용 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680, 2017. 6. 28. 임원을 보험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손금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7, 2022. 10. 26.
 - 내국법인이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실제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된 경우는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나,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및 학교법인의 인건비·관리운영비로 사용된 금액은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3, 2022. 10. 20. 소제기 후 법원 판결 전 분쟁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합의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34, 2021. 12. 30. 주식발행법인이 결손보전을 목적으로 발행주식 전량을 무상감자하고 이와 동시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 기존지분율에 따라 유상증자에 참여한 법인은무상감자 전 주식의 장부가액을 유상증자로 인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함
- 서면-2021-법령해석법인-6997, 2021. 12. 30.
 -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A법인')과 다른 내국법인(이하 'B법인') 간에 미국에서 영업비밀 침해 등의 사유로 분쟁이 발생하여 민사소송 등이 진행되던 중 상호 합의에 따라 모든 법적 분쟁을 취하하고 A법인이 B법인에게 합의금(이하 '쟁점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쟁점합의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원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의 결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과 달리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법원판결문 등에 의하여 명확히 확정되지 않아 분명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합의에 이르는 과정 및 합의내용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쟁점합의금이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

법」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819, 2021. 12. 10. 외화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적용할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이 외화를 기부했을 때의 해당 내국법인의 장부가액에 적용된 환율임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32, 2021. 12. 7.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6과「고용정책 기본 법」제25조 및 「취급고용조자 특별법」제7조에 따른 취급내이겠음고계에 기의하에 따라 나이치는 기어받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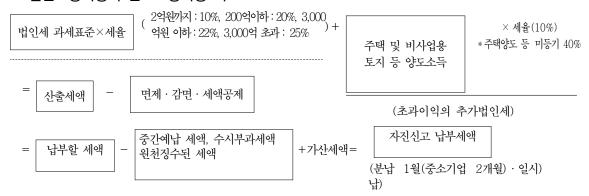
법」제25조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7조에 따른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함에 따라 납입하는 기업부담 금은 「법인세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0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며 해당 기업부담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7조제10항제4호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372, 2021. 10. 27. 해외투자법인이 청산할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한 평가손실은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에 손금에 산입하나,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218, 2021. 5. 25.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하고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에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30, 2021. 3. 4.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게 양도한 주식의 양도손실을 이연한 후 해당 양도손익이연 자산이 소각되는 것 은 이연된 양도손실의 환입사유에 해당함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04, 2020. 9. 4. 내국법인이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손금산입 금액은 행사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 전액임

2. 회계결산과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구조(광의의 세무조정)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 협의의 세무조정(소득금액조정) 각 사업연도소득 (손익계산서 표시) ⊕가산항목: ⊕익금산입⊕손금불산입 (1과세기간의 세무상 (=수익-제반비용·원가) ⊖차감항목: ⊖익금불산입⊖손금산입 당기순이익) 이월결손금(10년전까지 인정) 각 사업연 소득공제 법인세 과세표준 +중소기업은 1년후 결손도 비과세소득 (과세대상금액) 도 소득 소급공제 환급하여 기납부세 (특별공제항목) (특별혜택항목) 환급됨.

1.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 비교



- □**결산 조정**(주로 기업내부의 판단·측정으로 회계처리 재무제표 반영할 거래임)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양 회계의 목적과 기능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 그러나 세법에서는 특정한 손비에 대하여는 법인의 내부적 의사결정 즉, 결산확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항목이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산조정 항목

- ① 감가상각비(즉시상각액 포함)(법법 § 23)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의 유형자산 및 내용연수 비한정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등은 신고조정 가능
- ② 고유목적사업준비금(법법 § 29)
 - ☞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익처분에 의한 신고조정 가능
- ③ 퇴직급여충당금(법법§33)
- ④ 대손충당금(법법§34)
- ⑤ 구상채권상각충당금(법법§35)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 중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은 이익처분에 의한 신고조정 가능
- ⑥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부터 제1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대손금(법령 \$ 19의2③2)
- ⑦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손(법법 § 42③1)
- ⑧ 천재·지변 등에 의한 고정자산평가손(법법 § 42③2)
- ⑨ 다음 주식으로서 발행법인이 부도발생, 회생계획인가결정 또는 부실 징후기업이 된 경우 해당 주식 등의 평가손 (법법§42③3)
 - 창업자·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 회사·신기술 사업금융업자가 각각 보유하는 주식
 - 주권상장 법인이 발행한 주식
 -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2008.2.22.이후 평가분)
- ⑩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 등의 평가손(법법 § 42③4)
- ① 생산설비의 폐기손(법령§31⑦)

□**신고 조정**(주로 대외적 지출·구입·자금수지 거래임)

○ 신고조정은 결산조정과는 달리 결산확정에 의한 손금산입을 필요로 하지 않고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익금과 손금을 가감 조정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항목으로서 주요 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조정 항목

- 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법법 §18·6호)
- ② 퇴직보험료·퇴직연금 부담금 등(법령§44의2)
- ③ 공사부담금·보험차익·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 산입(법령 § 64, 내지 § 66)
- ④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법법 § 22)
- ⑤ 제 충당금·준비금 등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 ⑥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법법 § 23)
- ⑦ 건설자금이자의 손금불산입(과다하게 장부계상한 경우의 손금산입)(법법 § 28①3호)
- ⑧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의 차이로 발생하는 익금산입·손금불산입과 손금산입·익금불산입(법법 § 40)
- ⑨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 시 당해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 한함)

3. 중소기업의 법인세 신고에 특별히 적용되는 주요내용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은 일반법인에 비하여 각종 혜택이 주어집니다.

1. 세법상 중소기업 요건(조세특례제한법 규정)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소비성서비스업(조특령 § 29③)

-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부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 음식점업은 제외)
- 3.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매출액
 - ▷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1」의 기준 이내이어야 함
-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공시대상기업 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직전사업년도말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소유의 경우는 제외)한 최대주주인 기업이 아닐 것(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3①2호 나목 참조)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중기령§7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조특령§2①(1)에 따른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할 것
 - * 관계회사제도 : 중소기업 규모(매출액) 판단시 출자관계 형성 기업간 합산하여 계산하는 제도
- ○졸업기준 이내일 것
 - ▷ 자산총액이 5천억 이상

2. 중소기업의 판정 요령

- 업종의 구분
 - ▷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 § 22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 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매출액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 자산총액 :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
- 겸업의 경우 중소기업 해당업종 판정
 - ▷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봄(조특영 \$2③)
 - *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사업전체의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정함

3. **중소기업의 유예기간 적용**(조특영 § 2②)

- ○유예기간 적용 대상
 - ▷ 중소기업의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 초과
 - ▷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 중소기업이「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 3①(2),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조특영 § 2⑤)
- ○유예 적용 방법
 - ▷ 최초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 ▷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
- ○유예기간 적용 제외
 - ▷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기준에 적합한 기업 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조특령**§**2①3)
 - *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
 -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기준초과

4. 중소기업에 대한 세법상 지원내용

법인세법상 지원

내 용	일 반 법 인	중 소 기 업
접대비 한도액 (법법 § 25) (조특법 § 136)	- 용인한도액 : ①+② ①기본금액 1,200만원 ②수입금액×수입금액 적용율 0.03%~0.2%	- 용인한도액 : ①+② ①기본금액 3,600만원 ②좌동
결손금소급공제	해당없음	선택에 의해 가능
분납기간(법법 § 64)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1개월 이내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2개월 이내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원

내 용	일 반 법 인			중 :	소 기 업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해당없음	창업	후(벤처	기업 확인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
세액감면 (조특법§6)		도외	- 그 후	4년간 법인	세 50(75, 100)% 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해당없음		구분	소재지	업종 감면율
특별세액감면			1.5	J-11-1	제조업 등 20
(조특법 § 7)				ム ロ コ	알뜰주유소 20
* 2005.1.1. 이후 최초				수도권	도소, 의료업 10
개시 사업 연도 분부터			소기업		통관대리 등 10
본점기준에서 사업장			7/18		제조업 등 30 알뜰주유소 20
기준으로 변경				수도권 외	
(본점이 수도권 안에					도소, 의료업 10
있는					통관대리 등 15 지식기반산업 10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을				수도권	알뜰주유소 10
수도권으로 보아					제조업 등 15
감면비율			중기업	الم الحد عاما	알뜰주유소 15
작용)				수도권 외	도소, 의료업 5
식용)					통관대리 등 7.5
		*	하도) 소	기업, 줏기업	: 한도1억원(알뜰주유소 제외)
					: 한도 1억원-감소인원*5백만원
		*			년까지 특례적용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동일				네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
대한	* '18.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급			내금 지급한	
세액공제(조특법 § 7의4)	하는 분부터				급금액 × 0.5%
1 10 1 10 11					일내 지급금액 ×0.3%
					[내지급금액×0.15%
		1		81 월 00 월 법인세의 10%	
연구 및 인력개발비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 최	_	64.	B C: 1 - 107	0
세액공제(조특법§10)	대 30% [20% + (매출액 대비 신성		장동력 9	년구개발. 원	청기술연구개발비 × 최대
, , , , , , , , , , , , , , , , , , , ,	장 R&D 비중 × 3배]				비 신성장R&D비중×3배))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은 최대 40%(25%+α)				, 200 - , 0 - , ,,,
		국기	- -전략기술	· 승 연구개발	비 ×최대 50%[40%+(수입
	40%[30%+ (수입 금액 대비 국가전				
	략기술 R&D 비중 × 3배)]			, , , , , ,	
	위 해당·선택않은 경우	신성	장동력약	연구개발, 원	천기술연구개발×30%
	① · ②중 많은 것 선택			않은 경우	
	① 직전년도 연평균 발생액 초과금액	1 1			
	×25%				부금액× 50%
	② 당해연도 R&D비용 × 기본0% +				
	최대 2%(매출액 대비 R&D 비중의				
	1/2)]				[유예기간 포함) 3년간 15%,
	1/2/] ※ 중견기업 공제율 신설			2년간 10%	
	①·②중 많은 것 선택			고 한 10 / (조특령 § 9	
	① 직전년도 발생액 초과금액×40%			이 아닐 것	.
	① 작산전도 월생덕 소파급액^40% ② 당해연도 R&D 비용×8%			의 약될 것 날이 중소기약	어 어조
	 © 에 대고 IVOD 미용 > 0.00				집 집중 적 독립성 충족
					식 독립성 궁득 액 5천억 미만
		4. 4	7선 0년	정민 배출	ㅋ 5선터 비딘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고 도이	_ 트워권 드 여	기저스드에 대하	버이세 50% 가며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중견기업*은 중소기약		- 특허권 등 이전소득에 대한 법인세 50% 감면 - 특허권 등 대여소득에 대한 법인세 25% 감면				
(조특법 § 12)	* '22.1.1.이후 개시하는			게기ㅗㅋ게 에딘	합년/에 2070 '급년		
(221) 312)	적용	. 되세요고 교무의					
벤처기업 등에 출자시	중소기업과 동일		_ 베치기어 드	.에 추지시 추지	금액의 5% 세액공		
	37/11/1 3 2			에 철자가 철자	ㅁㅋㅋ J% 세곡 8		
세액공제			제				
(조특법 § 13의2)	ವಾಗ್ರನಿ ೧	<u> </u>	원리코 ô	조크리아. 시 그	그리시에 귀그리노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해당없음	ī			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조특법 § 19)			경영성과급의		1 1 - 1		
(소극법 § 19)				발생한 기업 요간			
트윈트리 제제고제			의대수수 등	등, 총급여 7천만원	! 조과사 세외 		
통합투자세액공제	11 M E TL(0/)		당기분		ᄌᆌᆸ		
(조특법 § 24)	시설투자(%)	대	중견	중소	증가분		
	일 반 ¹⁾	1	3	10	0		
	신성장·원천기술	3	5	12	3		
	국가전략기술2)	6	8	16	4		
	1) 771-111-11	.l어 0 0 취기 / (
	1) 공제대상자산 : ① /			r당, 비굼 등 세외)		
		부 유형자산(①제의	외)과 무영사산				
선기크리는 레키리이	2) '21.7.1. 시설을 투자		1 사기크리는	ماريان ماريان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 투자금액의 3%(대기	[업), 7%(중선/					
세액공제(조특법 § 25의6)	업)			-영화상영이 되는 날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 중견기업 15%		- 재고용 후 2	2년간 지급 인건	ы ×30%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 29의3)							
*경력단절사유에 임신 추가			77-1012	ام الم	111 011771 7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 중견기업 15%				이상 육아휴직 후		
세액공제(조특법 § 29의3)				비의 30% 세액			
					시 근로자 수가 감소		
77750 7-111-1	7 7 7 7 7 7	5-1 Al-72-1H		경우에 적용	-1 H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 직전 3년 평균 2		- - 식선 3년 평	한 조과 임금증	가운×20%		
기업에 대한	×5%(중견기업 10%		, <u>ग</u> नग गर	17270 711-	에게 하고즈리에 줘		
세액공제(조특법 § 29의4)	- 정규직 전환근로자의 가율 합계×5%(중견		- - 성규식 선원 계×20%	·근도사의 선턴니	케미 임금증가액 압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즈키이이 1이다	시계 구에		
고용을 등대시신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정시근도자 증가인된 - 액	1인성 아내 급	- 생시근도사				
(조특법 § 29의7)			구 분		중소기업		
(エコロ82371)	│	대기업		구도전			
			상시근	· ·	770		
		방 수도권 지방	청년정구		1,300		
	상시근로자 450 4: 청년정규직,	50 -	장애인근호	[사 등			
		00 400 500	* 상시 근로지	다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3년 적용		
	지 등	400 300					
	* 상시근로자수가 감소						
지그기 그그리 되었지	우 대기업 2년, 중견기		1 0001 0	이 취계 미리	77) 0 000 10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중견기업이 2021.6.30						
따른 세액공제(조특법 § 30의2)	을 2022.12.31.까지 정	J파식으도 선완 ^시] 31.까시 성	파식으도 선완시	1인당 1,000만원		
[세백동세(소득법 8 30의2)	1인당 700만원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_ 의기지여 주2	련기업은 중소기업과 동일	_ 세애고제	1 · 여가 이그	고가소 초애	× 10% +		
대한 과세특례(법§30의3)	11/1/17 6	U/ H C				.전액 × 15%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해당없음		~29세), 경				
대한 사회보험료		11 O BA L		, [의 사회보험		0 12-1		
세액공제(조특법 § 30의4)						· 사회보험료		
				성장서비스업		, , , _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중.	소기업과 동일				생하는 과세연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도와 그	후 6년(4년)간 100%,	그후 3년(2		
세액감면 등			년)간 5			·		
(조특법 § 63)			* 공장이	없는 경우	§63의2(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 이	전 감면) 적용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중:	소기업과 동일				생하는 과세연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도와 그	후 6년(4년))간 100%,	그 후 3년(2		
세액감면 등			년)간 5	50%				
(조특법 § 63의2)			* 소비스	성서비스업, ᅣ	부동산임대·중	·개·매매업, 건		
			설업 등	등은 제외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						
대한		는 내국인은 최초 소득발						
세액감면(조특법 § 64)		후의 4년간 법인세 50%						
	감면							
						주시 최초소득		
조기에 크기시키게 네쉬		의미 A) O		.와 그후 4년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 85의8)		해당없음	- 2년 이상 공장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 양					
사세국데(소국법 8 80 의 8)								
			도한 경우 양도차익 상당액 5년 거치 후 5년 동안 균등액 익금산입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에	_ 즈거 . 데기어	은 다음 한도 : 투자누계				네가 50 <i>0</i> ~ 가		
대한 세액감면		산시근로자수×1,500만원		00 <i>1</i> 0 т.,	<u>ا</u> الله	1선 50% 점		
(조특법 § 99조의9)	(청년 등 2.0			느 사업 위기	기지연 내 키	항업하는 기업		
(47 3004-10)	0 1 0 2,0	00 t t/	_	정기간 내 칭		0 1 7		
최저한세	①.②중 큰 금액		- 좌동	0.15 11 0) н. і н			
(조특법 § 132)	① 각종 감면후		'0					
(세표준 × 최저한세율						
		- 일반기업의 최저한세율	 차등적용					
	구분	과세표준	2010년	11~12년	2013	2014~		
	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 포함	7%	7%	7%	7%		
	3 — 1 月	유예기간 이후 1~3년차		8%	8%	8%		
		유예기간 이후 4~5년차		9%	9%	9%		
	일반기업	100억 이하		10%	10%	10%		
		1천억 이하	10%	11%	12%	12%		
		1천억 초과	14%	14%	16%	17%		
	L '		•	•	•			

 $2023 \cdot 03 \cdot 08$ www.taxpark.com 23

세무컨설팅 ||



202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사례 해설

법인세 과세표준 및 각 시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및 세무조정계산서 작성흐름도와 포함된 재무정보내용 이자소득 · 배당 공 제 감 면 세 액 및 추 액 산 소득 및 기타 과 가납부세액합계표 원 천 납 부 세 액 명 세 서 세된 소득의 종 소 득 공 제 조 정 명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세 류와 금액규모 최저한세적용관련 최저한세조정계산서 기 부 금 조 정 명 세 서 특별비용조정 지정기부금한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초과액 지정기부금조정명세서 세액조정계산서 인원현황, 급여총 (기부금명세서) ⊕표준재무제표 퇴직급여충당금 액현황, 근속연수 영업의 구체적 명 정 서 퇴직금추계액 과 내역. 수입금액 수 입 금 액 조 정 명 세 서 소 · 과대설정여부 Û 차이이유. 수익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인식기준, 회사 ⊕결산상당기순이익 채권의 건전성. 대 손 충 당 금 및 의 영업정책 소득금액조정합계 대손경험 · 위험채 대손금조정명세서 표(세무조정내용 관계회사 매출 · 권비율 · 불실여부 특수관계자간거래명세 총합계됨) 및 과목 매입·채권·채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감가 자산명세, 내용연 별 명세서⊕최저한 무현황 상각비조정명세서, 감가상 수, 과소·과대상 세 특별비용 조정 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각여부, 유형자산 회사의 불건전자금 ⊕지정기부금 한도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 운용현황 · 운영자 초과액 조 정 명 세 서 (갑·을) 현재 건설투자진 건 설 자 금 이 자 관계회사거래 ▲ ①법정서식있 ▲ 행중 자산내역 및 조 정 명 세 서 는 세무조 관련이자 자체보유 부동산 임대보증금등의간주 정 토지 등의 이용 익 금 조 정 명 종업원퇴직금예비 세 ②법정서식없 퇴직연금부담금 혅황 액의 사외보유, 는 세무조 뗫 세 서 예치현황 정(계산내 접대비와 매출거 접대비등조정명세서 역 및 근거 재평가차액상당액 래현황 재평가내역현황 (갑·을) 손 금 산 입 조 정 명 세 광고선전비조정명세서 (공사부담금・보험차익・국고 대외적 환율위험 국고지원내역 등 보조금) 상당액 손금산입 정도 외화의 구 외화자산등평가차속익 조자 조정명세서, 사용계획서 성내용(\$, ¥) 조 정 명 세 서 (갑·을) 부동산보유현황, 종준비 정 정 금 부동산내역, 업무 업무무관 동산 등에 관련 각종 세무조정관 용 · 비업무용여 명과 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 금 련 계정금액과 주 요 계 정 명 세 서(부표) 부. 가격·부동산 세입 (갑·을) 세무상 한도요약 과다보유정도 정명세 서금 재고자산평가방 각종 소득처분 소 득 자 료(상여·배당)명 세 서 (갑·읔) 재고자산 평가 조정명세서 법. 과대·과소평 부실거래파악 서 유기증권 평가 조정명세서 가, 재고수량의 곀 합 재 무 뀾 정확성, 이연자산 〈보조서류〉 ○ 중소기업기준검토표 : 중소기업 해당여부 잠재적 법 지방이전준비금: 본사 · 공장의 지방이전여부, 투자규모 ○소득구분계산서: 감면여부, 감면비율, 소득종류 인세 · 이 기술개발준비금: 연구개발, 기술인력양성현황, 미래지향적 투자 ○ 주식등지분변동상황명세서(갑·을): 주주변동, 연법인세 매매·주식양도, 증자·감자, 상속·증여 등 이 에너지절약시설투자준비금: 성력화, 환경보전, 자원절약 효과 전현황. 인수합병(M&A) 대비여부. 지분율 변동. 양도가액, 양도내용

1.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법인세법 제116조)

-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초과(2003년 이전 10만원 이상, 2007년 이전 5만원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와 1회에 지출한 접대비가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이하 "정규 영수증"이라 함)를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 다만, 5년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을 공제받는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해야 함.
- 법인이 이러한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 일반적인 재화·용역거래의 경우 그 거래금액의 2%를 가산세로서 납부하여야 하며
- 접대비의 경우 한도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지출증명으로 인정되는 정규영수증(법 §**116②, 영 **§**158③)

- 지출증명으로 인정되는 정규영수증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합니다.
 -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 직불카드·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기명식선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선불전자 지급수 단·기명식전자화폐 포함
 - 다음의 경우도 지출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
 - *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월별 이용대금명세서
 - * 전사적 자원관리(ERP)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 시행령§65의7의 요건을 충족 한 경우에 한함)
 - ②「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 ③ 「법인세법」제121조 및 「소득세법」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 ④ 현금영수증

《카드종류별 정규지출증빙 인정여부》

구	분	내용	인정(
법	인	신용카드에 법인명의와 당해 법인의 종업원개인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대금의	인	정
	카드	상환이 일차적으로 개인계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해당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		
기 권	./ [—	된 신용카드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간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하여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직불	카드	방법으로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		
		한 증표		
신	종	직불카드와 같이 예금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나, 신용카드와 같이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직불	카드	사용이 가능한 카드		
백호	타 점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백화점운용사업자가 발행하여 금융기관을 통하		
카	드	여 이용대금을 결제하는 카드		
선불	ש (ב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하여 발행	불인	정
		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의 제시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이 그 기록된 범위 내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ナノ	기명)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카드		
포	인 트	고객에 대한 보상프로그램(reward program)의 일종으로서 사용실적에 따른 포인트(점수)별로 사	1	
카	드	은품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함에 있어 그 포인트의 누적관리를 목적으로 교부된 카드		

* 기명식 선물카드는 정규영수증으로 인정(영 § 158③)

세무컨설팅Ⅱ

- 정규영수증으로 보지 아니하는 지출증명서류(통칙 116-158..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116②의 증명서류로 보지 아니합니다.
 - 실제 거래처와 다른 사업자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재화 또는 용역거래의 지출증빙 수취 의무

-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외의 지출액 에 대하여는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 -그러나 이 경우에도 영수증·입금표·거래명세서 등 기타 증빙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붙 임]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1. 공급받	은 자									
①법인명	(상호)		②사업	자등록번호		_				
③대표자	· 성명		④ 전	화 번 호	()	_				
2. 거래 5	및 송금내	역, 공급자								
⑤일련	⑥거래		9사업자	⑩거 래	①거 래	①송 금	[®] 은행명			
번호	일자	⑧성 명	등록번호	내 역	금 액	일 자	④계좌번호			
계										

2.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작성사례**(사업연도 2022. 1. 1~12. 31, 중소기업 아님)

□자 료

① 결산서상 수입금액 내역 : ② 제품매출 : 800,000,000원 ④ 공사매출 : 675,000,000원

② 공사현장별 공사현황

공사명	공사계약 체 결 일	도급계약기간	약기간 도급금액		손익계산서상 수익계상반영액
A	2021. 11. 10	2022. 2. 1~2023. 5. 17	700,000,000	460,000,000	470,000,000
В	2022. 7. 20	2022. 8. 10~2023. 9. 30	400,000,000	(600,000,000) 160,000,000 (300,000,000)	205,000,000
계	_	_	1,100,000,000	620,000,000	675,000,000

③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인 기계를 다음과 같이 매각하였음.

○계약일 및 인도일: 2022. 3. 31 ○계약금액: 18,000,000원

- ○대금결제조건 : 2022. 3. 31 계약금 3.000.000원을 받고. 6개월 경과시마다 3.000.000원씩 5회에 나누어 받기로 함.
- o 회사는 기계매각대금총액(18,000,000원) 및 장부가액(15,000,000원)전액을 당기의 수입금액 및 대 응원가로 각각 계상하여 결산하였으며
- 2022. 9. 30에 회수하여야 할 부불금 3,000,000원이 아직 결제되지 아니하였음.
- ④ 제품재고액 중 Y제품 8,000,000원은 타인에게 위탁판매하기 위한 위탁품(적송품)으로서 2022, 12. 31에 수탁자가 10.000.000원에 판매한 것임.
- ⑤ 2021년도 거래실적이 우수한 대리점에게 사전약정에 의하여 2022년 1/4분기 중에 매출에누리 하여 준 금액 5,000,000원을 영업외 비용으로 계상함.

□세무조정 계산

① 공사수익의 계산

공사명	①도급금액	②당해사업연도말 총공사비누적액	③총공사 예정비	④진행률 (②/③)	익금산입액(5) (①×④)	⑥회사수익 계상액	①조정액 (⑤-⑥)
Α	700,000,000	460,000,000	600,000,000	76.6%	536,200,000	470,000,000	66,200,000
В	400,000,000	160,000,000	300,000,000	53.3%	213,200,000	205,000,000	8,200,000
계	1,100,000,000	620,000,000	900,000,000		749,400,000	675,000,000	74,400,000

-공사수익 세무조정

세무상 공사수익: 749,400,000

장부상 공사수익: 675,000,000

익 금 산 입:74,400,000(유보)

② 장기할부매각 수입금액 및 대응원가 계산

○법인이 인도기준으로 결산조정 신고하였으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은 아니함.

③ 위탁판매 수입금액 조정계산

2023 - 03 - 08 www.taxpark.com 27

세무컨설팅Ⅱ

- 위탁판매액 10,000,000원은 익금산입, 원가 8,000,000원은 손금산입
- ④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에누리는 매출에누리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므로 동 에누리금액을 2022사업연도 수입금액에서 차감

조정내용 정리

-수입금액에 가산할 내용

② 공사매출

나 제품매출

· 위탁판매 수입계상 누락액 : 10,000,000원

- ·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조정액 : 74,400,000원
-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사항
- ⑦ 제품매출
 - ·매출에누리 금액(손금산입하는 것은 아님): 5,000,000원
- *조정내용 정리사항으로「수입금액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작성이 끝나면「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 서식)를 작성 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6호 서식]

[5/1 /1107	- (1,41								
사 업	2022. 1. 1	스이	수입금액조정명세서 법 인 명		법인명	d	(주	5) 안 건	
연 도	2022. 12. 31	TH	TBB박포장장세시					101-	-81 -12345
1. 수입금액 조정	계산								
계 정	과 목	③ 결산서상	3	2	정	6 수건	정후 수입금	급액	비고
① 항 목	② 과 목	수입금액	④ 가	산	⑤ 차 감	(3	(3+4-5)		
매 출	제품매출	800,000,000	10,000	0,000	5,000,000	0 805,000,000			
	공사매출	675,000,000	74,400	0,000		749	749,400,000		
계 1,475,000,0			84,400	0,000	5,000,000	1,554,400,000)	
2. 수입금액 조정	l명세								
가.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작 업 진 행 률		계 산		(4)전기말			16조 정 액
①공사명 8.	E급자 ⑨도급;	(m)당해시업 연도말총공 사비누적액	⑪총공사 예정비	⑫진행률 (⑩/⑪)	③누적익금 산입액 (⑨×⑫)	누적수입 계상액	(5)당기호 수입계신		(13 - 14) - (15)

	⑦공사명	8도급자	⑨도급금액	⑩당해사업 연도말총공 사비누적액	⑪총공사 예정비	⑫진행률 (⑩/⑪)	(3)누석익금 산입액 (9×12)	⁽⁴⁾ 선기말 누적수입 계상액	⑮당기회사 수입계상액	16조 정 액 (⑬-⑯ -⑮)
	А	갑	700,000,000	460,000,000	600,000,000	76.6%	536,200,000	0	470,000,000	66,200,000
	В	을	400,000,000	160,000,000	300,000,000	53.3%	213,200,000	0	205,000,000	8,200,000
계		1,100,000,000	620,000,000	900,000,000		749,400,000		675,000,000	74,400,000	

다. 기타 수입금액

⑪ 구 분	18 근 거 법 령	⑲ 수 입 금 액	20 대 응 원 가	비고
위 탁 판 매		10,000,000	8,000,000	
	계	10,000,000	8,000,000	

22226-02211일 99. 4. 1 개정승인

 $210\text{mm} \times 297\text{mm}$ 신문용지 54g/m²

3.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익금조정 개요

-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적용이불가능한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선택 허용)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영 \$88①(6), \$89③)
- 선택한 비율은 해당되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한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 법인세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 적용을 선택하면 3년간은 의무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사유(시행법칙 §43③)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 •대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대여금리가 차입법인의 가중평균 차입이자율보다 높은 경우
- 당좌대출이자율 변경 전 약정한 대여금에 대한 시가적용 방법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 88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지 않도록 금전대차거래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같은 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266호 2012. 2. 28. 개정된 것) 제43조제2항의 당좌대출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이 시행된 후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법인세법 시행령」제 88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법인세과-431, 2012. 6. 28)

○ 당좌대출이자율의 3년간 의무적용 여부

내국법인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3년간 의무적용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4년차) 법인세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선택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4년차)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기준-2016-법령해석법인-0205, 2016.10.12.)

■ 조정에 필요한 내용

- ① 미지급소득(배당소득,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규칙 § 44, 1호)
 - ☞ 개인지방소득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 상당액을 포함하며, 당해 소득을 실지로 지급 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합니다.

미지급소득에 = 종합소득 총결정세액 × <u>미지급소득</u> 대한 소득세 종합소득금액

- ②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에게 여비·급료·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산한 금액(법칙§44(2))
 - ☞ 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합니다.
- ③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법칙§44(3))
 - ☞ 조합원간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독점규제

세무컨설팅Ⅱ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 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합니다.

- ④ 국민연금법에 의해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법칙 § 44, 4호)
 - ☞ 당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합니다.
- ⑤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 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법칙 § 44. 5호)
 - ☞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합니다.
- ⑥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 범위안의 일시적 급료 가불금(법칙 § 44, 6호)
- ⑦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포함)의 대여액(법칙 §44, 7호)
- ⑧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 등인 직원은 제외)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여액(법칙 § 44 (7의2))
- ⑨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여한 금액(법칙 § 44(8))

4.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작성사례(사업연도: 2022. 1. 1~2022. 12. 31)

① 총급여액 지급내역

계 정 과 목	총 급 여 액		퇴직급여	여지급 대상자	퇴직급여지급대상이 아닌자	
판매 관리비 : 임원급여	3	180,000,000			3	180,000,000
판매 관리비 : 급여수당	30	602,000,000	7	54,000,000	23	548,000,000
제 조 원 가 : 임금	110	1,678,000,000	25	233,000,000	85	1,445,000,000
	143명	2,460,000,000	32명	287,000,000	111명	2,173,000,000

- ② 퇴직급여충당금 내역
 - ⑦ 장부상 기초잔액: 578,000,000원
 - ④ 충당금 부인누계액: 38,000,000원
 - 때 기중 퇴직금지급액: 104.000.000원
- ③ 기말 현재 전사용인 퇴직급여추계액(정관규정에 따른 추계액): (111명) 1,798,000,000원
- ④ 기말 현재 전사용인 퇴직급여추계액(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추계액): (111명) 1,500,000,000 워
- ⑤ 회사가 당기에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 129,300,000원
- □세무조정 계산
- ① 퇴직급여지급대상이 아닌자에 대한 급여는 총급여액 계산에서 제외
- ② 총급여액의 5/100와 퇴직급여추계액의 0/100에 퇴직급여 충당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이 한도액이 됨.
- ③ 한도초과액 129.300.000은 손금불산입

[별지 제32호 서식]

—— 사 업	2022. 1. 1.		법	인	명	(주)안건
여 도 연 도	~ 2022. 12. 31.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사업	자등록	번호	101-81-12345

1. 퇴직급여충당금 조정 ①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 「법인세법 ③한도액 ②설정률 비고 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19의 계) (1×2)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5/100 108,650,000 2,173,000,000 따른 한도액 ④장부상 ⑤확정기여형 ⑥기 중 ⑦충당금 ⑧기 중 ⑨차감액 충당금 퇴직연금자의 충당금 부인누계액 퇴직금 (4)-(5)-지급액 기초잔액 퇴직급여충당금 화입액 (6)-(7)-(8)) 「법인세법 (\triangle) 578,000,000 0 0 38,000,000 104,000,000 시행령 | 제60조 436,000,000 제2항 및 제3항에 12설정률 감소에 따른 ⑩추계액 대비 설정액 (13) 누적한도액 따른 한도액 ① 퇴직금 전환금 환입을 제외하는 금액 (22) × 설정률) (10-9)+(1)+(12)MAX(9-10-11), 00 0 436,000,000 0 14한도액 16 한도초과액 ① 회사계상액 한도초과액 MIN(3, 13) (15-14)계 산 0 129,300,000 129,300,000

2.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 명세

구분	⑪총급여액		18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임원 또는 사용인 에 대한 급여액		(1)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액		⑩기말현재 임원 또는 사 용인 전원의 퇴직시 퇴 직급여 추계액	
계정명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원	금 액
임원급여	3	180,000,000			3	180,000,000	111	1,798,000,000
급여수당	30	602,000,000	7	54,000,000	23	548,000,000	②)「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 따른 추계액[퇴직인	
제조비 임금	110	1,678,000,000	25	233,000,000	85	1,445,000,000	금미	가입자의 경우 일시
								기준(⑩)을 적용하 계산한 금액
							인원	금 액
							111	1,500,000,000
							22세법	상 추계액
							MAX	K(20, 21)
계	143	2,460,000,000	32	287,000,000	111	2,173,000,000	111	1,798,000,000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5. 퇴직연금 부담금 등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방법

■ 조정에 필요한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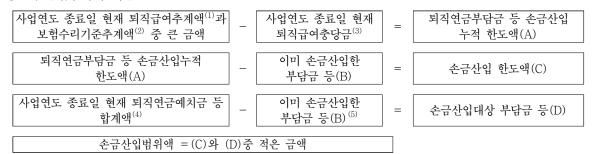
-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익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법칙 \$23 각호에 따른 보험회사 등이 취급하는 퇴직연금(이하 "퇴직연금 등"이라 한다)의 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일정 한도 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영 \$44의2②)
-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동법 제24조에 따른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확정기 여형 퇴직연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하고,
 - 그 외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은 일정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며, 2 이상의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부터 손금에 산입합니다.(법령§44의2④)

① 퇴직연금 등의 범위(법칙 § 23)

- 손금산입 하는 퇴직연금 등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연금을 말합니다.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 「은행법」에 따른 은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 ☞ 퇴직보험·신탁 폐지에 따라 2011. 1. 1. 이후 납입하는 퇴직보험·신탁 보험료 등은 손금산입 되지 않습니다(법영 §44의2②, 2010. 12. 30. 개정).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보험료 등은 익금에 환입하지 아니하며, 보험료 등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2010. 12. 30. 영 부칙 §19)

② 손금산입범위액 계산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 야 할 금액의 추계액(법령 § 44에 따른 손금불산입액과 법령 § 44의2③에 따른 손금 산입액 제외)을 말합니다.
- ○다음 ᄀ. Ը의 합계액(법령 § 44에 따른 손금불산입액과 법령 § 44의2③에 따른 손금 산입액 제외)
 - □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 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제16조 제1항 제1호)

- ①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중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 도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그 재직기간 중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그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더한 금액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층당금=장부상 기말잔액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설정자의 설정전 계상 된 퇴직급여층당금 - 당기말 부인누계액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연금예치금 등 합계액=기초 퇴직연금예치금 등 기중 퇴직연금예치금 등 수령 및 해약액+당기 퇴직연금예치금 등의 납입액
-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 등=기초퇴직연금층당금 등 및 전기말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액 퇴직연 금층당금 등 손금부인누계액 - 기중 퇴직연금 등 수령 및 해약액
- ③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방법
- 퇴직연금부담금 등을 납입하고 퇴직연금예치금 등으로 자산 계상한 경우에는 결산조정에 의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더라도
 - 세무계산상(신고조정)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 로 보아 영 \$4440을 적용하되.
 -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 한도 초 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영§44의2③단서)

6.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 ① 사업연도말 현재 전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자 제외) 퇴직급여추계액(정관 규정에 따른 추계액): 100,000,000원
- ② 사업연도말 현재 전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자 제외) 퇴직급여추계액(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 따른 추계액): 50,000,000원
- ③ 퇴직급여충당금 전기이월액 : 20,000,000원, 당기설정액 : 10,000,000원(한도초과액 없음)
- ④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손금산입한 퇴직연금부담금 : 60,000,000원
- ⑤ 전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불입한 퇴직연금부담금 : 70,000,000원
 - → 이중 당해사업연도에 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연금은 15,000,000원임.
- ⑥ 당기회사불입액: 25,000,000원
- ⑦ 당기에 회사가 손금산입한 퇴직연금부담금 : 35,000,000원

세무컨설팅Ⅱ

□세무조정 계산

- ① 퇴직급여 추계액: 100,000,000원 [MAX(100,000,000원, 50,000,000원)]
- ② 당기말 퇴직급여충당금: 30,000,000원 (20,000,000+10,000,000)
- ③ 퇴직연금부담금 등 손금산입누적 한도액(①-②):70.000.000원
- ④ 이미 손금산입한 퇴직연금부담금: 45,000,000 (60,000,000-15,000,000)
- ⑤ 손금산입 한도액(③-④): 25,000,000
- ⑥ 기말현재 퇴직연금예치금등: 80,000,000(70,000,000-15,000,000+25,000,000)
- ⑦ 손금산입대상 퇴직연금부담금 등: 35.000.000 (⑥-④)
- ⑧ 한도액: 25,000,000 (⑤와 ⑦ 중 작은 금액)
- ⑨ 한도초과액: 10,000,000(35,000,000-25,000,000)

[별지 제33호 서식]

사업	2022. 1. 1.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법	인	명	(주)안건
연 도 	2022. 12. 31.		사업기	자등록번:	호	101-81-12345

1.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조정

		⑥퇴직부담금등			
①퇴직급여추계액	②장부상 기말잔액	③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자의 ④당기말 설정전 기계상된 부인 누계액 퇴직급여충당금		⑤차감액 (②-③-④)	©되역구립급등 손금산입 누적 한도액 (①-⑤)
100,000,000	30,000,000			30,000,000	70,000,000

①이미 손금 산입한 부담금 등(①)	8 손금산입한도액 (⑥-⑦)	9손금산입대상 부담금 등(18)	⑩손금산입범위액 (⑧과 ⑨ 중 작은 금액)	⑪회사손금계상액	@조정금액 (⑩-⑪)
45,000,000	25,000,000	35,000,000	25,000,000	35,000,000	△10,000,000

2.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 등의 계산

가. 손금산입대상 부담금 등 계산

⑬퇴직연금 예치금등 계(⑫)	(4)기초퇴직연금 충당금등 및 전기말신고조정 에 의한 손금산입액	⑮ 퇴직연금충당금 등 손금부인 누계액	①6 기중퇴직연금등 수령 및 해약액	⑦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등 (⑭-⑮-⑮)	®손금산입대상 부담금 등 (®-⑦)
80,000,000	60,000,000		15,000,000	45,000,000	35,000,000

나. 기말 퇴직연금 예치금 등의 계산

⑪ 기초퇴직연금예치금 등	⑩기중 퇴직연금예치금 등 수령 및 해약액	②당기 퇴직연금예치금 등의 납입액	②퇴직연금예치금 등 계 (⑪-⑩+⑪)
70,000,000	15,000,000	25,000,000	80,000,000

210×297mm(신문용지 54g/m³(재활용품))

7. **대손충당금조정명세서 작성사례**(사업연도 : 2022, 1, 1~12, 31(금융기관이 아닌 일반법인임))

- ① 사업연도: 2022. 1. 1~12. 31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법인임)
- ② 매출채권 등 내역
 - · 받을 어유 : 41.000.000(보증금담보용 견질어음 20.000.000 포함)
 - · 외상매출금 : 154,000,000(부가가치세 14,000,000 포함)

계 : 195,000,000

- ③ 대손충당금 계정내역
 - · 장부상 기초충당금 2,300,000(전기부인액 300,000포함)
 - · 다라(주) 당기 대손금상계액(12/31): 400,000(미확정 대손금 100,000포함)
 - ·당기 손금계상액 50,000 (전기이월 대손충당금잔액 1,900,000원을 당기 손금산입할 금액에 충당하고 잔액만 손금계상함)
- ④ 대손실적율: 0.9%

□세무조정계산

- ① 매출채권 등 총액계산
 - · 받을 어음 21,000,000원(보증금담보용 견질어음 20,000,000원 제외)
 - · 외상매출금 154,100,000원(당기대손금상계액중 미확정대손금 100,000원을 포함)

계 175,100,000원

- ② 한도액 계산=1,751,000원 $(175,100,000원 \times \frac{1}{100})$
- 설정율 : 1%(일반법인)와 대손실적율 0.9% 중 큰 비율임
- ③ 환입 또는 보충할 금액 계산
 - ·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 2,300,000원
 - · 충당금 부인 누계액(-): 300,000원
 - · 당기대손금 상계액(-) : 400,000원

계 : 1,600,000원

- ④ 과다환입 또는 보충액 계산
 - ·보 충 액:1,900,000원
 - · 보충할 금액 : 1,600,000원

계 : 300,000원 과다보충액 발생

- ⑤ 조정내용 정리
 - · 당기대손금중 미확정대손금 100,000원 손금불산입
 - 한도초과액 199,000원 손금불산입 * 회사 설정액(1,900,000+50,000) 세무상 한도액(1,751,000)
 - 과다보충액 300.000원 손금산입 *회사 보충액(1.900.000) -세무상 보충할 금액(1.600.000)

[별지 제34호 서식]

사 업 연 도	2022. 1. 1.		법	인	명	(주)안 건
	~ 2022. 12. 31.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사업기	자등록번	호	

1. 대 손	충당금조정									
	①채권잔액				3			회사계상액		⑦한도초과액
손 금	(21)의 금액)	2	②설정률			한도액 (①×②)		⑤보충액	⑥계	(6-3)
산입액 조 정 	175,100,000	(¬) 1(2) 100 (•)	(L) 실적률 ()	(ㄷ) 적립 기준 ()	1,751,00	00	50,000	1,900,000	1,950,000	199,000
의 금 산입액 조 정	⑧장부상충당금기초잔액	⑨기중 충당금 환입액	⑩충당 부 누계	인	①당기대손금 상 계 액 (⑦의 금액)		⑫당기 설정충당금 보 충 액	③환입할 금 액 (8-9-⑩ -⑪-⑫)	⑭회사 환입액	⑤과소환입 · 과다환입(△) (③-⑭)
<u> </u>	2,300,000		300,0	000			1,900,000	Δ300,000		△300,000
	16계정과목	①채권 장부			말현재 무인누계		①합계 (①+①®)	20) 충당금 설정제외 채 권	②체권잔액 (①9-②))	비고
=1	받을 어음	41,000	0,000			4	11,000,000	20,000,000	21,000,000	
채 권 잔 액	외상매출금	154,00	0,000	100	0,000	1.	54,100,000		154,100,000	
_ •										
	계	195,00	0,000	100	0,000	1'	95,100,000	20,000,000	175,100,000	

2. 대손	:금조정										
22	23	24	25	26	대	손충당금상기	액	딩	기손금계상	액	
	계정	채권	대손		27)	28	29	30	31)	32	비고
일자	과목	내역	사유	금액	계	시인액	부인액	계	시인액	부인액	
											시효
12.31	외상매출금	안건(주)	시효소멸	400,000	400,000	300,000	100,000				미완성
											100,000
	계				400,000	300,000	100,000				

3. 국제회계기준 등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액의 조정

	<u>o</u>	금에 산입할 금액			
③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③ '법인세법」 제34조제i항	③ 「법인세법」제34조제4		③ 상계후 대손충당금 환	
	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	36차액 Max	입액의 익금불산입 금액	비고
익금불산입 금액	할 금액	여야 할 금액 Mas[0,	(O,34-35)	(33-36)	
	Min(3,6)	((8-(0-(1)))]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8.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손금산입 조정

구 분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법§36)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법§37)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법§38)						
대상법인	다음의 법률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 받는 내국법인 ①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① 지방재정법 ②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② 전기사업법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⑥ 당어촌정비법 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① 전기·도시가스사업 ① 액화석유·충전 집단공급 및 판매사업 © 집단에너지공급사업 ②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사업 ① 수도사업	모든 법인						
손금산입 요 건	1	수요자 또는 편익자로부터 금전·자재를 교부받아 사업시설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취득하거나 유형자산 및 무형 자산을 취득하고 이에 대한 공사부담금 을 사후에 제공받은 경우 그 시설을 구 성하는 토지, 기타 유형자산 및 무형자 산을 제공받은 경우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용 도나 목적이 동일한 유형						
손금산입 범 위 액	소요된 국고보조금 전액	소요된 공사부담금 전액	소요된 보험차익 전액						
사용시	🗇 일시상각충당금은 해당 사업용자신	· 나의 감가상각비 중 다음의 금액과 상계							
익금산입	일시상각충당금에 대한 감가상각비 = 손금에 산입되는 감가상각비 × 일시상각충당금 자산의 취득가액 © 사업용 자산 등을 처분하는 경우 상계 후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 산입								
미사용시		-가 발생한 날 익금산입							
익금산입	ℂ 사용 전 폐업 또는 해산 시 해당	① 사용기한 내 미사용 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익금산입 ① 사용 전 폐업 또는 해산 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익금산입 (단,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법인 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 제외)							
기 타	•세무조정계산서에 일시상각충당금 •감가상각비는 일시상각충당금의 범								

9.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종 류	손금산입 대상	손금산입 범위
(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74)	○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 산학협력단,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비 영리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 국립 암센터, 지방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 도서관·박물관·미술관운영 법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 전액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운영법인은 당해 사업과 당해 시설 안에서 이용자 를 대상으로 한 수익사업에 한함

2023 · 03 · 08 www.taxpark.com 37

	○ 지방문화원·예술의전당 ○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지방 시ㆍ군 소재 비영리 의료법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 득금 액 ×
	* 인구 30만명 이하이고 국립 대학교 병원·사립대 학교 운영병원이 없는 지역(조특칙 별표8의6)	$\frac{100}{100}$
(나) 자본확충목적회사 손실보전준비금 (§ 104의3) * 2009. 5. 21. 이후 준비금 손금계상 분부터 적용	○ 금융기관*의 자본확충지원을 위해 설립된 법인 *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다음 중 적은 금액 손금산입 ① 해당사업연도 손실보전준비금 손금산입 전 소득금액 전액 ② 신종자본증권 잔액과 후순위채권 잔액 합계액의 10%에서 해당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손실보전준비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
(다) 신용회복목적회사 손실보전준비금 (§ 104의12) * 2010. 1. 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신용회복목적회 사	○해당 사업연도 손실보전준비금 손 금 계상액

10. 업무무관부동산 등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① 지급이자 총액

이자율	지급이자	차입금 적수	비고
20%	5,000,000*	9,125,000,000	* 채권지불분명 사채이지임(원천징수
13%	7,800,000	21,900,000,000	* 세면시골판당 시세에시합(전전당구 세액 1,375,000원 포함)
10%	15,000,000	54,750,000,000	시력 1,373,000천 포함/
계	27,800,000	85,775,000,000	

② 특수관계에 있는 자(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내역

-2022. 4. 20 가지급 7.000.000

-2022. 8. 15 가지급금 회수 5,000,000

③ 토지계정: 임대용 나대지 20,000,000(취득가액, 해당기간: 2022, 1. 1~2022, 12, 31)

④ 사업연도: 2022. 1. 1~2022. 12. 31

세무조정 계산

①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손금불산입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3,625,000원(상여) 손금불산입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원천징수세액 1,375,000(기타사외유출)

②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

 $22,800,000 \times \frac{7,300,000,000+1,097,000,000}{(76,650,000,000)} = 2,497,737$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2,497,737(기타사외유출)

[별지 제26호 서식(갑)] (앞쪽)

사 업	2022. 1. 1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법 인 명	(주) 안 건
연 도	~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갑)	사업자등록번호	
	2022. 12. 31		16.10727	

1. 업	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	련한 차	입금지	디급이자							
						적수				⑥차입	اعا	(7)	®손금불산입
①지급이자		②업무무관 부동산		③업무- 동산	l l)계 3+ 4)	(=19		⑤와 ⑥중 적은 금액	
22,8	00,000	7,300	,000,000			1,097,	000,000	8,397,000,000		0 76,650,000,000		8,397,000,0	2,497,737
2. 지	급이자	및 차	입금 적=	수계산									
9 이자	1 (10) X I -		급 ⑪차입금		(12)Ā	채권자불분명 사채 등		채이자	⑤건설자금이자 등		차 감		감
율				적수		지급 이자			⑪차입금 적수	(18지급이자 (10-13-16)		⑩차입금적수 (11)-14)-17)	
20%	5,00	0,000	9,125	,000,000	5,	000,000	9,125	5,000,000				0	0
13%	7,80	0,000	21,900	,000,000								7,800,000	21,900,000,000
10%	15,00	0,000	54,750	,000,000								15,000,000	54,750,000,000
합계	27,80	0,000	85,775	,000,000	5,	000,000	9,125	5,000,000				22,800,000	76,650,000,000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별지 제26호 서식(을)] (앞쪽)

사	업	2022. 1. 1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법 인 명	(주) 안건
연	도	2022. 12. 31	이자조정명세서(을)	사업자등록번호	

		①연월일	②적요	③차변	④대변	⑤잔액	<u>⑥</u> 일수	①적수	
1. 업	무무관부동산의	2022. 1. 1	전기이월	20,000,000		20,000,000	365	7,300,000,000	
적	수								
		계		20,000,000		20,000,000	365	7,300,000,000	
2. 업	무무관동산의								
^{2.} 적									
	I	계							
3.		2022. 4. 20	가지급	7,000,000		7,000,000	117	819,000,000	
0.		2022. 8. 15	회수		5,000,000	2,000,000	139	278,000,000	
가	⑧ 가지급금								
지	등의 적수								
급금									
ㅁ틍		계		7,000,000	5,000,000	_	256	1,097,000,000	
의	◎ コヘコ								
적	⑨ 가수금 = N저스								
수	등의적수	계							
4. ユ	밖의 적수								
		계							
5. 자	5. 자기자본 적수계산								
⑩대차대조표		⑪대차대조표		⑫자기자본		® 지어어도 이	_	O I A	
	자산총계	부채총계		(10-11)		⑬사업연도 일		14)적 수	

11.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 ○법인은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보관하고 다음의 서류를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합계표
 - 감가상각시부인 명세서
 - -취득·양도자산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취득자산·취득일·취득가액 내역〉

- 일반자산(내용연수 4년 선택)

-P·C 등(2021. 1. 1 취득): 6,000,000 -화물차(2021. 8. 1 취득): 4,500,000

번이면

㈜ 아 거

- 상각율(내용년수 4년): 0.528

○건 축 물

- 일반건축물(내용연수 40년 선택, 2021. 2. 25 취득) : 31,000,000

-공장건축물(내용연수 20년 선택)

· 공장 등(2021. 1. 27 취득): 17,200,000 · 창고 등(2021. 7. 25 취득): 8,000,000

○ 업종별 자산

- 업종(22 : 인쇄업) : 내용연수 5년 선택

· 기계장치(2021. 1. 27 취득): 17,200,000 · 기계장치(2021. 7. 2 취득): 10,000,000

· 상각율(내용연수 5년) : 0.451

2022. 1. 1.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4)] <개정 2019.3.20>

11 04							법인명	위 안 건
사 업 연 도	2022. 12. 31.	감가성	상각비조정명	명세서 합겨	班	사업자등록번호		
				유형	자산 및 무	구형지	나 산	6
①자산구분		코드	② 합계액	③ 건축물	④ 기계장:	え	⑤ 기타자산	무형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⑩기말현재액	01	93,900,000	56,200,000	27,200,0	000	10,500,000	
재무 상태표 상가액	⑩감가상각누계액	02	16,316,000	1,810,000	10,150,0	000	4,356,000	
	⑩미상각잔액	03	77,584,000	54,390,000	17,050,000		6,144,000	
⑩상각범·	위액	04	15,940,616	1,770,416	10,012,200		4,158,000	
⑩회사손·	금계상액	05	16,316,000	1,810,000	10,150,0	000	4,356,000	
	⑩상각부인액 (⑯-伽)	06	750,584	189,584	195,00	00	366,000	
조정 금액	⑩시인부족액 (⑭━⑯)	07	375,200	150,000	57,20	0	168,000	
	⑩기왕부인액 중 당 기손금추인액	08						
⑩신고조	정손금계상액	09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별지 제20호 서식(1)]

사 업	2022. 1. 1	유형・무형자산감가상각비	법 인 명
연도	~		사 업 자
<u>.</u>	2022. 12. 31.	조정명세서(정률법)	등록번호

	2022. 12. 31.			O I NOEE/			2	
71.11	① 종 류 또 는	업 종 별	총 계	비품	차량	제조업	제조업	П
자 산		드는 자산별		p.c	화물차	인쇄업	인쇄업	
구 분	③ 취 득	일		2021. 1. 1	2021. 8. 1	2021. 1. 27	2021. 7. 2	
④ 내 용	연 수 (신	고·기 준)		4	4	5	5	
상 .		말 현 재 액	37,700,000	6,000,000	4,500,000	17,200,000	10,000,000	
- 4	ᇺᄮᇻᅄᅄᆦᄼ		14,506,000	3,000,000	1,356,000	7,700,000	2,450,000	
계	0 비 상	각 잔 액(⑤-⑥)	23,194,000	3,000,000	3,144,000	9,500,000	7,550,000	
H	⑧ 회 사 계 산 감	가 상 각 비	14,506,000	3,000,000	1,356,000	7,700,000	2,450,000	
F		지 출 액						
	10 전 기 말 의 제 상	각 누 계 액						
가	⑪전 기 말 부	인 누 계						
액		7+8+9-10+11)	37,700,000	6,000,000	4,500,000	17,200,000	10,000,000	
⑬ 일 반 ·	상 각 률 · 특 별	별 상 각 률		0.528	0.528	0.451	0.451	
	당기산출(생일 반	상 각 액	14,170,200	3,168,000	990,000	7,757,200	2,255,000	
	사 간 애[19 즉 별	상 각 액						
상	' 16 계	(14) + (15)	14,170,200	3,168,000	990,000	7,757,200	2,255,000	
각		현 재 취 득 가 액						
범		사계산증가액	37,700,000	6,000,000	4,500,000	17,200,000	10,000,000	
위		본 적 지 출 액	27 700 000	0.000.000	4 500 000	17 000 000	10,000,000	
액	20 계 (⑪	+(18)+(19)	37,700,000	6,000,000	4,500,000	17,200,000	10,000,000	-
계 산	20) 잔 존 가	액 (@× $\frac{5}{100}$)	1,885,000	300,000	225,000	860,000	500,000	
	② 당 기 상 각 시 [166, 단(⑫-166)≤②10	인 범 위 액 !경우⑫]	14,170,200	3,168,000	990,000	7,757,200	2,255,000	
② 회 사	계 산 상	각 액(8+9)	14,506,000	3,000,000	1,356,000	7,700,000	2,450,000	
24 차	감	액 (図-②)	△225,200 561,000	△168,000	366,000	△57,200	195,000	
② 최 저 한	세 적 용 에 따 른 특 별	상 각 부 인 액						
	26 상 각 부 역	인 액(24+25)	△225,200 561,000	△168,000	366,000	△57,200	195,000	
조정액	② 기 왕 부 인 액 중 당 7 (⑪, 단, ⑪≤ △	손 금 추 인 액 ②이)						
	말 부 인 누 계 약	性 (⑪+26- ②)	561,000		366,000	0	195,000	\neg
	29 당 기 의 제 상 각 액 (\(\text{2} - \(\text{2}) \)						
제 상 각 액	30의 제 상 각 누	계 (⑩ + 29)						
	③기 준 상	각 률						
사가비게사	③ 종 전 상	각 비						
(2012 12 21		- { 23- (29- 11) }]						
이저치드브	③ 추 가 손 금 산	입 대 상 액						=
		추가 손금산입액						\dashv
신고소성감가 (상 각 비 계 산 (③6 기 획 재 정 부 령 으 로 정 하 ②7 기 조 가 기 사							\dashv
1/2012 1 1								\dashv
이 후 취 득 분)	39 추 가 손 금 산입 후 당기말부인액	산 입 액 누계(29-33-39)						\square
③) 추가 손금	교급 후 당기될 구인액	T 11 (60-60-60)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2)] <개정 201	2.2.28>			(앞 쪽)
_{사 업} 2022. 1. 1. 유형 • 무형자신		<u>'</u> 나비	법 인 명	㈜ 안 건
연도 2022. 12. 31. 조정명세서		• •	사업자등록번호	
지 사 ① 종 류 또 는 업 종 명	총 계			
자 ^간		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구 분 ③ 취 득 일		2021. 2. 25	2021. 1. 27	2021. 7. 25
④ 내 용 연 수 (기 준 · 신 고)		40	20	20
재무상태표 ⑤ 기 말 현 재 액	56,200,000	31,000,000	17,200,000	8,000,000
│ │ │ │ │ │ │ │ │ │ │ │ │ │ │ │ │ │ │	1,810,000	800,000	960,000	50,000
상 각 자 산 가 액 (⑤ - ⑥)	54,390,000	30,200,000	16,240,000	7,950,000
계 산 의 회 사 계 산 ⑧ 전 기 말 누 계				
그 그 기 기 기 기 의 당 기 상 각 비	1,810,000	800,000	960,000	50,000
기 초 상 각 비 ⑩당기말누계(⑧+⑨)	1,810,000	800,000	960,000	50,000
가 액 자 본 적 ⑪ 전기말부인누계				
기 기 출 에 ② 당 기 지 출 액				
(4) 취 득 가 액 (⑦ + ⑩ + ⑬)	56,200,000	31,000,000	17,200,000	8,000,000
(5) 일 반 상 각 률 · 특 별 상 각 률		0.025	0.050	0.050
	1,770,416	710,416	860,000	200,000
· 상 · 각 │ 사 · 가 · 애 │ (17) · 특 · 별 · 상 · 각 · 액				
범 위 백 <u> 100 게 (100 + 100)</u>	1,770,416	710,416	860,000	200,000
계 산 ^(®) 당 기 상 각 시 인 범 위 액 { (®), 단 (®) ≤ (4) - (8) - (1) + (25) - 전기(28)}	1,770,416	710,416	860,000	200,000
②회 사 계 상 상 각 액 (⑨ + ⑫)	1,810,000	800,000	960,000	50,000
②차 감 액 (②- ⑩)	△150,000 189,584	89,584	100,000	△150,000
②최 저 한 세 적 용 에 따 른 특 별 상 각 부 인 액	,			
	△150,000	00.504	400.000	
조 정 액 (20	189,584	89,584	100,000	△150,000
(⑤, 단 ⑥≦ Δ ⑦)				
부인액누계 (전기 명 부 인 액 누 계 (전 기 명)	0	0	0	0
	189,584	89,584	100,000	0
당기말의 ②당기의제상각액(Δ ② - ②)				
제 상 각 액 28의 제 상 각 의 누 계 (전 기 28+ 27)				
(2013.12.31 (2013.12.31 (2013.12.31) (2013.12.31) (2013.12.31) (2013.12.31)				
이전 취득분) <u>⑩추 가 손 금 산 입 대 상 액</u> <u>③3동종자산 한도계산 후 추가손금산입액</u>				
신고조정감가 @시기 활재 정 부 령 으로 정 하는 기 준 내 용 연 수				
상각비계산 후 기 기 기 비 기 비				
(2014.1.1 0) 6 1 2 4 1 0 1 1 2 -				
후 취득분) ®추 가 손 금 산 입 액 ®추가 손 금 산 입 약 당 기 말 부 인 액 누 계				
		010mm\/007	'mm[배사자] 80a/m² 다	느 즈지디 00~/_2]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12. K-IFRS를 적용하는 법인의 감가상각 특례

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K-IFRS를 적용하는 법인의 감가상각비 감소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유무형자산 감가상각비의 신고조정을 허용하였습니다.(선택사항)

(가) 신고조정 요건 및 대상자산

- 적용요건 : K-IFRS을 적용하는 내국법인
- 대상자산 : 사업용 유형자산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이하 "결산내용연수"라 한다)를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무형자산
 -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자산으로서 사용 기간이 무한하거나, 무한하지 아니하더라도 취득가액의 10% 미만의 비용으로 그 사용기간을 갱신할 수 있을 것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 분류될 것
 - 결산을 확정할 때 해당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것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 전에 취득한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
 - ☑ 2012.2.2.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 유형고정자산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즉시상각의제에 해당되는 자산은 신고조정할수 없다(법인세과-222, 2012. 3, 28).

(나) 신고조정 적용방법

- 결산서상 인식한 감가상각비에 추가하여 신고조정 한도까지 손금산입 가능
- (다) 신고조정 감가상각비 한도액 계산
 - 2013.12.31. 이전 취득 자산(아래의 '동종자산'을 말함)
 - K-IFRS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감가상 각비(이하 "종전감가상각비"라 함)가 법인세법 \$ 23①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산입 가능(법법 \$ 23②(1))
 - (손금산입한도) 다음의 ①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개별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 23②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동종자산별로 합한 금액이 ○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함(법령 § 26의2②)
 - ①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경우: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 기준상각률
 - * 기준상각률 계산 : 기준연도 및 그 이전 2개 사업연도의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합계액÷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의 평균 비율(법령§26의2④(1))
 - − 기준연도에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한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 : 미상각잔액 × 기준상각률
 - * 기준상각률 : 기준연도 및 그 이전 2개 시업연도의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합계액 /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 평균액
 - **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잔존가액은 취득가액의 5%로 하고 미상각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 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영\$26⑥.단서 준용)
 - ②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함)
 -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제23조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기준상각률)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법인세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 * 기준상각률은 ①의 정액법과 같이 적용
- 기준연도에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한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제23조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동종자산의 미 상각잔액 합계액×기준상각률)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제23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 * 기준상각률은 ①의 정률법과 같이 적용
- 2014.1.1. 이후 취득 자산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 비 상당액이 결산서상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

13. 기부금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 ① 기부금계정의 금액은 104,500,000원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⑦ 법정기부금 : 2022. 4. 1. 지출한 이재민구호금품 5,000,000원 2022. 8. 1. 지출한 사립대학 시설비 10,000,000원

2022. 9. 1. 지출한 국립대학병원 연구비 40.000.000원

- ① 10%한도 기부금: 48,000,000원 [2023, 1, 31 만기 지급어음 5,000,000원 포함]
- 때 전액 손금불산입 기부금 1.500.000원
- ②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178,500,000원
- ③ 세무조정
 - ②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 41,500,000원 ⇒ 전액 손금불산입 기부금 및 어음으로 지급한 기부금 포함됨.
 - (i) 손금산입·익금불산입: 39,000,000원
- ④ 「법인세법」 § 13. 1호 규정의 이월결손금: 135,000,000원
- ⑤ 사업연도는 2022. 1. 1~2022. 12. 31이며 일반 영리법인임.

□ 세무조정 계산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계산〉

- ① 50%한도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
 - ②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279,000,000(178,500,000 + 41,500,000 39,000,000) + (5,000,000 + 10,000,000 + 40,000,000 + 43,000,000*)
 - * 어음으로 지급한 5,000,000원은 2023년 기부금이므로 손금부인
 - ④ 손금산입한도액: 72,000,000 = (279,000,000 135,000,000) × 50%
 - ⊕ 한도초과액: △17,000,000(한도미달) = 55,000,000 72,000,000
- ② 10%한도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 ② 손금산입한도액: 8,900,000 = (279,000,000 135,000,000 55,000,000) × 10%
 - ④ 한도초과액: 34,100,000(한도초과) = 43,000,000 8,900,000

[벽지 제21호서식] <2012 2 개정>

[별지 제21	호서식] <2012.2. 개기	정>								
1000-	2022. 1. 1.	-1L		tullu l		법	인	명	(주)안건
사업연도	2022.12.31.	기 두	금 조정명	MM		사업자	등록반	호	101-	81-12345
1. 법정기투	금 손금산입액 한도액 계	 산								
①소득금액	계	27	79,000,000	⑤ 이월잔액 경	중 손금	H산입액 I	MIN[4,	23]		55,000,000
	」 제13조제1항제1호에 월결손금 합계액	13	⑥해당연도자	출액 손	금산입액	MIN[(4)-(5)}0, 3]			
③「법인세법	」 제24조제3항에	[55,000,000	⑦한도초과액	[(3-	6))O]				89,000,000
	성기부금 해당 금액 [(①-②))0]×50%}	-,	72,000,000	⑧소득금액	시감잔	백 [(①-②	2)-(5)-(6))	0]		
0 [7.IIE	게기들[] 기사이 그 이 4이 [171 071117	7등1시1 기구드11	- JIHT AT	111010	M =1 = 0n	-111.L			
	례제한법」제88조의4에 대 제한법		소압에 시술하는	- 기무금 손	신압	색 안노색	계산			
13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기 			⑪ 손금산입약	백 MII	N(9, 10)				
	(1) -(2) ×30%	4	4,500,000	⑩ 한도초과	백[(⑨	⊢⑩)}0]				89,000,000
	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신	<u> </u>								
	1」제24조제4항에		43.0	000,000	6 해E	당연도기출약	백 손금신	입액		
때른 지	정기부금 해당 금액 ⑧×10%, 20%)			900,000	MIN	[(14-15))(), (13)			
(B) 이월잔인	<u> </u>	14, 23)) 한도	· 초과액[(f:	3-16))0			34,100,000
	한도초과액 총액	<u> </u>	금산입 합계(⑥	V (A) (B)			ラレニ ラコ	ION 중단비/@	a)_(G	VIQUA)
	글 합계액(③+⑨+⑬) 98.000.000	(9) E	H(1)+(10)	+(1)+(6) ②한도초과액 합계((34,10()+(2)+(7))	
	_{96,000,000} 이월액 명세		63,900,000					34,100	,000	
사업			② 한도초과			② 공자	I7I는	26해당시	(년 년	27차기이월액
연도	기부금 종류		손금불산입9	백 2화기공기	네액	잔액(23	-	손금추		(25-26)
	「법인세법」 제24조제3항(기부금	게 따른 법정					,			, ,
합계	- 7 1 1 8 「법인세법」 제24조제4항(기부금	게 따른 지정	34,100,0	00		34,10	0,000			34,100,000
	「법인세법」 제24조제3항(게 따른 법정								
	기부금 「법인세법」제24조제4항(게 따른 지정	34,100,0	00		34 10	0,000			34,100,000
	<u>기부금</u> 「법인세법」제24조제3항(에 따른 법정				3 1, 70	-,000			2 ,, 100,000
	<u>기부금</u> 「법인세법」제24조제4항(에 따른 지정								
	기부금	0								
6. 해당 시	시업연도 기부금 지출역	액 명세								
사업연도	기누		@기출	액 합	계금액		당 사업연5 금산입액		③차기 이월액 (⑥-②)	
	법인세법」제24조제3항에							0287		(6 6)
	「법인세법」제24조제4항에	<u> </u>	ТО							

14. 접대비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다음은 2022. 1. 1.~2022. 12. 31.의 (주)가나의 접대비와 관련 자료임.

- 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 ⑦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제조·도매: 섬유)
 - ① 매출액: 제조·도매: 500억(특수관계자와의 거래 100억 포함)

출 : 300억

잡수익 중 매출액 해당액: 10억

- ② 접대비 지출에 관한 사항
 - ② 일반관리비 중 접대비: 1억5천만원
 - 1회 3만원 초과 지출분 : 1억원(신용카드 등 사용분 92백만원*) └ 1회 3만원 이하 지출분 : 5천만원(신용카드 등 사용분 40백만원)
 - * 법인신용카드 사용분에는 2021년 8월 중 지출한 문화접대비 1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 과고선전비 및 회의비 중 접대비: 22백만원 (전액 1회 3만원초과 지출분으로서 신용카드사용분 : 2천만원)
 - © 건설가계정(건물)중 접대비: 57백만원
 - 1회 3만원 초과 지출분 : 43백만원(전액 신용카드 사용) 1회 3만원 이하 지출분 : 14백만원(신용카드사용분 12백만원)

 - ⇒ 당해연도에 건물을 준공하여 감가상각비 계상
 - 취득가액: 40억원
 - └ 감가상각비 계상액:4천만원

□세무조정 계산

- ① 세무상 접대비 해당액:
 - 219,000,000 = (150,000,000 8,000,000*) + (22,000,000 2,000,000*) + 57,000,000
 - * 8,000,000 및 2,000,000은 정규영수증 미수취에 따른 접대비 직부인된 금액임
- ② 접대비 한도액 계산: 162,600,000원(152,600,000원+10,000,000원)
 - ⑦ 일반 접대비 한도액: 152,600,000원 (36,000,000 + (i)+(ii))
 - (i) 일반수입금액 기준
 - 110.000,000 + (71,000,000,000 50,000,000,000) × 3/10,000 = 116,300,000
 - (ii) 특수관계거래 수입금액 기준
 - $\{\{110,000,000 + (81,000,000,000 50,000,000,000) \times 3/10,000\} (i)\}$ $\times 10\% = 300,000$
 - 단 문화접대비 한도액 계산: 10,000,000원
 - $Min[10.000.000 . (152.600.000 \times 20\%)]$
 - →접대비 한도초과액: 219,000,000 162,600,000 = 56,400,000
- ③ 세무조정
 - 3만원 초과 접대비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10.000.000*원
 -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

2023 - 03 - 08 www.taxpark.com 47

- ☞ 다만.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을 접대비로 허위 계상한 금액은 귀속자(불분명시 대표자) 에 대한 상여로 처분
 - * 1회 3만원초과 지출분중 신용카드 미사용액(일반관리비 8,000,000, 광고선전비 2,000,000)
- 접대비 한도초과액 56,400,000원
 -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
 - 한도초과액이 접대비로 비용처리한 금액(142,000,000원 + 20,000,000원)에 미달하므로 건물의 가액을 감액할 금액은 없음

[참고사례]

접대비 한도초과액이 접대비 등으로 비용처리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자산계정에 접대비 지출액 이 있는 경우 그 초과액의 처리방법

※ 위 사례의 경우 접대비한도 초과액이 172,00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접대비 등으로 비용처리한 금액 162,000,000 원을 10,000,000원 초과하게 되어 다음과 같은 세우조정이 필요함.

〈세무 조정〉

- ○10.000.000원은 자산계정인 건물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설중인 자산·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순으로 자산가액을 감액하고 동 금액을 손금가산 유보로 처분함.
- ○건물의 당해 사업연도 상각비중 자산감액처리분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분함.
 - ⇒ 당초 접대비 손금부인에 따른 자산감액처리시 손금가산 유보로 처분된 금액과 상계됨.

-건물감가상각비 중 손금불산입액 계산

(당해 연도)
$$40,000,000 \times \frac{10,000,000}{4,000,000,000} = 100,000 \cdots 손금불산입(유보)$$

(2차 연도) 40,000,000×
$$\frac{9,900,000}{3,960,000,000}$$
=100,000 ··········손금불산입(유보)

(3차 연도 이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여 손금불산입)

[별지 제23호서식(갑)] <2021.3. 개정>

[27 7 1/202	-17(省)] 〈2021.3. /	11.87				(앞 쪽)	
사업연도		2022. 1. 1. 022. 12. 31.	접대비조정명세서(갑)	법 사 업 자	인 가 등 록	명 번 호	(주)안건 101-81-12345	
				1				
			구 분				금 액	
① 접대비 해당	당 금액						229,000,000	
②기준금액 최	과 접대	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				10,000,000	
③차감 접대비	해당 급	글액(①-②)					219,000,000	
		1,200년 ④ (중소기업 3,		<u>!</u> 수(12)			36,000,000	
			100억원 이하의 금액×30/10,000				30,000,000	
		총수입금액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북 ×20/10,	000		80,000,000	
		기준	500억원 초과 금액×3/10,000	9,300,000				
일반			⑤소계	119,300,000				
^{글 단} 접대비 한도			100억원 이하의 금액×30/10,000		30,000,000			
		일반수입금액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20/10,C	000		80,000,000	
		기준	500억원 초과 금액×3/10,000				6,300,000	
			⑥소계	116,300,000				
		⑦수입금액 기준	(⑤-⑥)×10/100			300,000		
		⑧일반접대비 한도	- - - - - - - - - - - - - - - - - - -		152,600,000			
문화접대비	한도	⑨문화접대비 지출)문화접대비 지출액					
(「조세특례제한 6조제3형		⑩문화접대비 한도 (⑨과 (⑧×20/		10,000,000				
①집대비 한도액 합계(®+®)						162,600,000		
②한도초과액(③-⑪)						56,400,000		
⑬손금산입한	☞손금산입한도 내 접대비지출액(③과 ⑬ 중 작은 금액)							

www.taxpark.com 49 $2023\cdot 03\cdot 08$

[별지 제23호서식(을)] <2013.2. 개정>

٨١	업연도	2022. 1. 1	접대비조정	l며세서 <i>(</i> .	<u></u> ≘)	빝	1	인	명	(2	주)안건
	604	2022. 12. 31	<u> </u>	0011111	르/ 	٨	나 업 자	등 록	등 록 번 호 101		81-12345
1. 수	입금액명세										
	7	- 분	①일반수입금액	②특수관계인간 거			거래금액			③합 계 (①+②)	
	=	- 액	71,000,000,000)	10,00	0,000	,000		81,0	00,00	0,000
2. 접	대비 해당	금액									
④ 계	정 과 목			일반관리 접 대			선전비, 비 등	건	선설가계정 (건물)	7	합 계
⑤ 계	정 금 액			150,000),000	22,0	00,000	57	,000,000) 22	9,000,000
⑥ 접	대비계상액	중 사적 사용경비									
⑦ 접	は대비 해당	금액 (⑤ - ⑥)		150,000),000	22,0	00,000	57	,000,000) 22'	9,000,000
	경조사비		⑨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8	기준금액	초과액	⑩총 초과금액								
신 용	국외지역	지출액 법시행령」제41조제2	⑪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카 드	항제(호)	타시 이 이 기세 된 그 씨 (⑫총 지출액								
믕	농어민 지		③송금명세서 미제출금액								
미 사	(립인제 항제2호)	법시행령」제41조제2	⑭총 지출액								
용 금	접대비 경	5	⑤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8,000,	000	2,00	0,000		0	10,	,000,000
액	기준금액	초과액	16총 초과금액	100,000,000		22,000,000		43	,000,000	165	5,000,000
(⑦신용카드 등 미사용 부인액 (⑨ + ⑪ + ⑬ + ⑮)				8,000,	000	2,00	0,000		0	10,	,000,000
18접	대비부	인액(⑥+⑰)		8,000,	000	2,00	0,000		0	10	,000,000

소득 처분

법인세법상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에서 익금산입사항과 손금불산입 사항을 가산하고, 익금불산입사항과 손금산입사항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렇게 익금에 가산된 금액 등이 누구에게 귀속하는가를 확정하는 세법상의 절차를 소득처분이라 합니다. ※ 이러한 소득처분은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에도 적용됩니다.

[소득처분 구조] 손익계산서상 익금산입 익금불산입 각사업연도 = 당기순이익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소득 $\downarrow \downarrow$ 소득처분 사외유출 기타 유보 귀속 분명 귀속 불분명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 대표자 상여 법인·개인 사업소득구성 법정 사외유출(법령§106①3)

15.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세무조정 사례

- □ 차량운행기록부 작성, 차량관련 비용이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A법인*(12월말 법인)이 '22.1.10, 2억원의 승용차를 구입한 후, 임원이 '22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법령§42②)에 해당하지 않음
 - '22년 운행기록부 내역 중 업무용사용비율 70%, 대표자 사적 사용분 30%로 확인된 경우
 - 해당연도 차량관련비용 자동차보험료 2,000,000원, 유류비 16,000,000원, 자동차세 2,000,000원을 계상하였고, 감가상각비*는 미계상 하였으나 총 차량관련 비용은 60.000.000원임.
 - * 200.000.000원÷5년=40.000.000원
 - ○(세무조정)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비율만큼 손금 인정 (감가상각비 8백만원 한도)

2023 - 03 - 08 www.taxpark.com 51

- 차량유지 비용 세무조정
- 차량 관련 유지비 사적 사용액 6,000,000원*, 손금불산입(상여)
 - * 차량유지비용(20,000,000원)×사적사용(30%)=6,000,000원
-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 감가상각비 미계상 세무조정: 40,000,000원* 손금산입(유보)
 - * 200,000,000원÷5년=40,000,000원
- 차량 감가상각비 사적 사용액 12,000,000원*, 손금불산입(상여)
 - * 감가상각비(40,000,000원)x사적사용(30%)=12,000,000원
- 업무용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20,000,000*원, 손금불산입(유보**)
 - * (감가상각비(40,000,000)×70%)-MIN[(40,000,000원×70%), 상각한도(8,000,000)]
 - ** 한도 초과분은 누적잔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까지 이월 공제
- ② 차량운행기록부 미작성, 차량관련 비용이 1천5백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 B법인(12월말 법인)이 '22.1.10. 2천만원 승용차를 구입한 후, 임원이 '22년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운행기록부를 미작성, 해당연도 차량관련비용 자동차보험료 500,000원, 유류비 2,000,000원, 자동차세 500,000원, 감가상각비 4,000,000*원 계상하여 총 차량관련 비용은 7,000,000원임
 -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법령842②)의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 * 20.000.000원÷5년=4.000.000원
- (세무조정) 회사가 계상한 차량관련 유지비용 7,000,000원*은 총 인정비용 1천5백만원(감가상각비 한 도 8백만원) 한도내이므로 세무조정 없이 전액 인정
 - * 500,000원+2,000,000원+500,000원+4,000,000원=7,000,000원
- ③ 차량운행기록부 미작성, 차량관련 비용이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 C법인*(12월말 법인)이 '22.1.10. 2억원의 승용차를 구입한 후, 임원이 '22년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운행기록부를 미작성, 해당연도 차량관련비용 자동차보험료 2,000,000원, 유류비 16.000,000원, 자동차세 2.000,000원을 계상하였고, 감가상각비*는 미계상한 경우
 -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법령§39③)의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 ** 200.000.000원 ÷ 5년 = 40.000.000원
- (세무조정) 1천5백만원 한도내에서 손금인정하므로 차량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 유지비와 감가상각비용을 안분계산하여 초과분 세무조정
 - 차량유지비 세무조정
 - 간주업무사용비율 : 25%*
 - * 1천만원 초과비용(15,000,000) / 총비용(60,000,000)
 - 차량관련 유지비 손금 부인액 15,000,000원* 손금불산입(상여)
 - * 총 유지비(20,000,000)-[총 유지비(20,000,000)×간주업무사용비율(25%)]

- 감가상각비 회사 미계상 세부조정 40,000,000원 손금산임(유보)
- 차랑 감가상각비 사적 사용액 30,000,000원*, 손금불산임(상여)
 - * 감가상각비(40,000,000원)-[감가상각비(40,000,000)x간주업부사용비율(25%)]
- 업무용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2,000,000원, 손금불산입(유보**)
 - * 【감가상각비 (40,000,000)×25%】 Min【(40,000,000원×25%), 상각한도(8,000,000)】
 - ** 한도 초과분은 누적잔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까지 이월 공제

16. 조정항목별 소득처분 사례

ㅈ저하모	내 용	익 금	가 산	손 금	가 산
조정항목	네 · ㅎ 	조정구분	처 분	조정구분	처 분
	○인도한 제품 등의 매출액가산 ○동 매출원가	익금산입	유 보	손금산입	유 보
수입금액	○ 전기매출가산분 당기결산상 매출 계상 ○동 매출원가	손금불산입	유 보	익금불산입	유 보
	○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가산 ○ 전기 수입금액가산분 당기결산 수입계상	익금산입	유 보	익금불산입	유 보
접대비	○ 한도초과액 ○ 법인명의 신용카드 미사용액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지정기부금	○ 당기미지급기부금 ○ 전기미지급기부금당기지급액(당기 한도액계산시 포함)	"	유 보	손금산입	야 보
	○ 당기가지급 계상분 (한도액계산시 포함) ○ 전기 가지급 계상분 당기 비용처리	손금불산입	유 보	손금산입	유 보
	○출자자(출자임원 제외)	익금산입	배 당		
가지급금 등의	○사용인(임원 포함)	"	상 여		
등의 인정이자	○법인 또는 사업영위 개인	"	기타사외유출		
	○전 각 호 이외의 개인	"	기타소득		
소득세 대납액	○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처분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손비로 계상 하거나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회수하지 아니하 여 익금산입한 금액	"	기타사외유출		
건설자금	○ 건설중인 자산분 ○ 건설완료 자산중 비상각 자산분	손금불산입 "	유 보 "		
이 자	○ 전기부인 유보분중 당기건설이 완료되어 회사 자산계상			익금불산입	유 보
채권자가 불분 명한 사채이자	○ 원천세 제외 금액 (대표자) ○ 원천세 해당금액	손금불산입 "	상 여(대표자) 기타사외유출		

2023 · 03 · 08 www.taxpark.com 53

		익 금	· 가 산	손 금	가 산
조정항목	내 용	조정구분	처 분	조정구분	처 분
수령자불분명 채권 · 증권의 이자 할인액	○ 원천세 제외 금액 (대표자) ○ 원천세 해당금액	손금불 산입 "	상 여 기타사외유출		
비업무용 부동산등 지급이자	○비업무용 부동산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 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각 종 준비금	○범위초과액 ○과소환입 ○과다환입 ○전기범위초과액중 환입액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준비금	손금불산입 익금산입	유 보 "	익금불산입 " 손금산입	유 보 " 유 보
	○세무조정에 의해 환입하는 준비금	익금산입	유 보		
퇴직급여 충 당 금	○범위초과액 ○전기부인액중 당기 지급 ○전기부인액중 당기 환입액	손금불산입	유 보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유 보 "
퇴 직 보험료	○범위초과액 ○전기부인액중 당기 환입액	손금불산입	유 보	익금불산입	유 보
대손충당금	○범위초과액 ○전기범위초과액 중 당기 환입액	손금불산입	유 보	익금불산입	유 보
재고자산	○당기평가감 ○전기평가감 중 당기 사용분 해당액 ○당기평가증 ○전기평가증 중 당기 사용분 해당액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유 보 유 보	손금산입 손금산입	유 보
국 고 보조금등	○ 잉여금으로 계상한 국고 보조금 등 ○손금산입한도 초과액 ○세무조정에 의한 손금계상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기 타 유 보	손금산입	유 보
감 가 상 각 비	○당기부인액 ○기왕부인액중 당기 용인액	손금불산입	유 보	손금산입	유 보
기 타	○법인세 등 ○벌과금, 과료 ○임원퇴직금 범위초과액 ○법인세 환급금 및 이자 ○영 \$88①8호 \$8호의2 \$9호의 규정에 의하 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증 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손금불산입 "" 이금산입	기타사외유출 " 상 여 기타사외유출	익금불산입	기 타
	○ 잉여금증감에 따른 익금 및 손금산입	익금산입	기 타	손금산입	기 타

17.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작성

①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해당액 내역

	고	· 목		금	액	내 용
수	입	배	당 급	3,000	0,000	수입계상 누락분
재	고 자	산 평	가 ?	F 770	0,000	재고자산 과소평가액
퇴	직 급	여 충	당 급	840	0,000	한도초과액
대	손	충	당 금	13	4,000	한도초과액
연	구 및 인	력 개 발	준 비 금	560	0,000	한도초과액
인	정	٥	ス	130	0,000	대표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세	금	공	Ī	} 65 ₄	4,000	토지매입에 다른 취득세
잡			Ħ] 7:	5,000	벌과금
건	설 7	나 금	이 ㅋ	F 2,340	0,000	건설자금이자 과소계상액(토지)
법	인	세	7	2,000	0,000	중간예납 등

②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해당액 내역

	과		목		금	액	내 용
재 감 수	고 자 가 입	산 상	평 각 이	가 Z ㅂ ㅈ	380, 1,340, 22,		전기 손금불산입 유보분중 당기사용분 전기부인누계액중 당기용인액 국세환급금 이자

[별지 제15호 서식]

사 업 연 도				법 인 명
2022. 1. 1 ~ 2022. 12. 31	소 득금 액조	정합계표		(주) 안 건
사 업 자 등 록 번 호	101 - 81 - 12345	법 인 등 록 번 호	11011	1-1234567

	익금산	입 및	손금불	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①과 목	②금 액		③소득처분		ادرب	④과 목		⑤금	액		⑥소득처분			
U-F =		© □	Ä		처분	코드	9-4 7			9p =			처분	코드
수 입 배 당 금		3	000	000	ઋ	400	재 고 자 신	난 평 가 감			380	000	유보	100
재 고 자 산 평 가 감			770	000	"	400	감 가 싱	남 각 비		1	340	000	"	100
퇴직급여충당금			840	000	"	400	수 입	이 자			22	000	기타	200
대 손 충 당 금			134	000	"	400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560	000	"	400								
가지급금인정이자			130	000	상여	100								
세 금 과 공 과			654	000	유보	400								
잡 비			75	000	기타 사외유출	500								
건 설 자 금 이 자		2	340	000	유보	400								
법 인 세 등		2	000	000	기타 사외유출	500								
합 계		10	503	000			합	계		1	742	000		

2023 · 03 · 08 www.taxpark.com 55

18. 최저한세 조정계산 사례

○ A법인 : 농공단지입주 중소기업(조특법 § 64)

○ 입주일 : 2019. 5. 1

○ 감면비율: 50%

○ 사업연도 : 2022. 1. 1~12. 31

○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250,000,000원

과세사업 관련 소득: 30,000,000원 기가면사업 관련 소득: 220,000,000원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5,000,000원(전액 과세사업 관련 소득임)

○ 차감소득 : 255,000,000원

과세사업 관련 소득: 35,000,000원 기간면사업 관련 소득: 220,000.000원 기간면사업 관련 소득: 220,000.000원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1,000,000원(최저한세적용 제외대상)

□세무조정 계산

○다음의 1과 2중 많은 금액 17,850,000원에서 최저한세적용 배제대상 세액공제액 1,000,000원을 차 감한 16.850,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각종 감면 후 세액 ⇒ 17,627,451

· 과세표준 : 255,000,000원

· 산출세액 : 31,000,000원(255,000,000×세율)

· 감면세액 : 13,372,549원(농공단지입주기업)

$$13,372,549 = 31,000,000 \times 220,000,000/255,000,000 \times \frac{50}{100}$$

· 각종 감면후 세액 : 17,627,451

*최저한세적용 제외대상인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1,000,000원 미차감 금액임.

2. 최저한세 (감면전 과세표준의 7%) ⇒ 17,850,000원

		감	면전 3	라세표	<u> </u>	최저한세율	최저한세	
차	가	감	소	득	255,000,000	× 7% =	17,850,000원	
		계			255,000,000	× 170 =	17,800,000€	

19.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조정계산서 작성사례

○다음 자료에 의하여 ①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②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봅시다.

□자 료

- · 사업연도 : 2022. 1. 1~12. 31
-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며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대상 아님.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내역》

과 목	금 액	내용
건 설 자 금 이 자	4,520,000	건설자금이자 과소계상액
수 입 배 당 액	1,000,000	수입계상누락분(미수금임)
재 고 자 산 평 가 감	770,000	재고자산평가감액임
퇴직급여충당금	840,000	한도초과액임
대 손 충 당 금	694,000	한도초과액임
퇴 직 금	220,000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
인 정 이 자	130,000	대표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세 금 공 과	654,000	토지매입에 따른 취득세
잡 비	75,000	벌과금임
미지급기부금	2,340,000	전기 손금산입 유보분임
법 인 세 등	2,000,000	손금불산입
합계	13,243,000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 내역》

과 목	금 액	내용
전 기 대 손 부 인 액	380,000	대손부인액중 회수된 상각채권추심이익 계상액
재 고 자 산 평 가 감	4,110,000	전기손금불산입 유보분중 당기사용해당분
감 가 상 각 비	1,340,000	전기부인누계액중 당기용인액
수 입 이 자	22,000	국세환급금이자
대 손 금	2,720,000	소멸시효완성된 외상매출금
합계	8,572,000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세무조정 생략

《기타 내역》

① 법인세 공제후 당기순이익 200,000,000원 ⑥ 정규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 90,000원 ②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5,000,000원 ⑦ 중간예납법인세 18,000,000원 ③ 이월결손금(5년 미경과) 2,000,000원 ⑧ 원천납부법인세 3,000,000원 ④ 비과세 및 소득공제 없 음 ⑨ 조정후 수입금액 3,000,000,000원

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50.000원

□조정계산 내역

- ①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 당해연도 해당사항 없음.
- ②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의 작성 · 계산
 - 과세표준 207,671,000
 - 산출세액 : 200,000,000 × 10% + 7,671,000 × 20% = 21,534,200
- 공제감면세액∋에 해당하는 ⑤항을 동서식(121)에 기재

2023 · 03 · 08 www.taxpark.com 57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답인	세 꾸게							
①사업자등록번호		31-12345		_	등 록 번 호	5	110	0111-1234567		
③법 인 명) 안건		④전 화	번 호	<u> </u>				
⑤대 표 자 성 명	홍	길 동		⑥전 자 우	편 주소					
⑦소 재 지										
8 업 태	제조		⑨종 목	기초	화학물	⑩주	업종코드		24110)2
①사 업 연 도	2022. 1. 1.	~ 2022.	12. 31.	⑫수시	부과기간			~ .		
0 1 2 2 -									-	<u> </u>
⑬법 인 구 분 ①.)		(비율 %	6)	(4)조 정	구 분	1 21 21 =	2. 자기			
⑤종 류 별 구 분 중소			07 È이익과세	16의부감		1.)여	2. 부			
		강기군	드이극피제	しまする	시네공	-				
상 장 법 인 11 영리 크스다사자버이 21	12					①정기				
법인 코스닥상장법인 21	22							면분석, 나.기티	十)	
기 타 법 인 ③	40			□ 100신 고	. 구 분					
	70		Γ0			4. 중도	폐업신고			
비 영 리 법 인 60	70		50			5. 경정	청구			
18법인유형별구분		코드		19결 산	확 정 일	Ī				
200신 고 일			<u> </u>	21)납	부 일					
<u> </u>	신청일			2. 연장기현						
32 12 2002 14				1 20 12	=					
 구 분		여	부		구			여		부
		1	(2)	② 장부전신		<u> </u>		1	+	2
						Luiála Nt	1	-	_	
⑤사업연도의제 		1	2	∅ 결손금소급공제 법인세환급신청 1						
②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	_ : :-	1	2	_	등평가방법 [,])	2
29기능통화 채택 재무제표	도 작성	1	2	③ 과세표준	환산시 적	용환율				
③]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	자)	1	2	③2국제회겨	기준(K-IFF	(S)적용		1		2
	신청	1	(2)	48감가상각	방법변경승역	인 신청		1		(2)
④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고		「번이세번.			0000					
	1 12 11 12 0 11	00.1101	100=12-1	<u>법</u>	인	세				
구 분	법	인 세			 등 양도소=		시이네		계	
③ 수 입 금 액		그 제	(3,000,00		0 0 1 1 -	i에 네란 E			/ 11	
		7 (71 000	3,000,00	JO,000)						
생과 세 표 준 35)산 출 세 액		7,671,000						21	F2.4	200
		,534,200		21,534,200						
<u>③총</u> 부 담 세 액		,374,200		21,374,200						
③기 납 부 세 액		.000,000								,000
≫차 감 납 부 할 세 액		374,200						3	374,2	200
<u>40</u> 차 감 납 부 세 액										
4D조 정 반 번 호					성	명				
				43조정자	사업자	등록번호				
@조 정 자 관 리 번 호					전호	·번호				
	44예 입 처				<u>'</u> 은행		 (본)지점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F						にいい台			
(환급세액이 2천만원 ④예금종류 미만인 경우)						حالم				
	46계 좌 번 호					예금				
신고인은「법인세법」제60	조 및「국세기본법」	제45조, 제	45조의 2, 제	네45조의 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				토하였고 신
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 신고인(대표자)	내도들 성확이게	식있음을 목	4인압니다.	(서며	ㄸ느 이)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소세선문자4 세무대리인	취사도서 위 신고서		고 공성하게 : 계법인 (서명		4인압니나.					
_{처ㅂ} 1. 재무상태표,	2. (포괄)손익계(('주식회사의 외부 정계산서	산서, 3.0	기익잉여금처	부(결손금처리)	계산서.					۸۸ =
점부 1. 세구성대표, 성류 4. 현금흐름표 성류 5. 세모조	([주식회자의 외부	감사에 관현	한 법률,제23	에 따른 외부	감사의 대성	낭이 되는 '	법인의 경우	P만 해당합니	다),	수수료 없 음
	니시 (시									L DV D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법인	L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개	정 2020.	. 3. 13.>	(앞쪽)
	사 업	2022. 1. 1.	-1.0 -1.0		법 인 명	
	· 년 연 도	. ~ 멉	인세 과세	표순 및	! 세액조정계산서 _{사업자등록번호}	
_		2022. 12. 31.				
①	⑩ 결		01 20	000 000 000	(3) 감 면 분 추 가 납 부 세 액 29	
-			02 13	243 000		374 200
각	소 득	역 (1) 손 금 산 입	03 8	572 000		07 1200
사	1000 大	자 가 감 소 득 금 액_			양도 ⑬ 등 기 자 산 31	
로		(((((((((((((((((((04 20	04 671 000	차익 1월 미 등 기 자 산 32	
소	① フリ		05 5	000 000	☞ 비 과 세 소 득 33	
소득계	_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손금산입 - 나이어도 A 도그애	54		(3) 과 세 표 준 ((3)+(3)-(3)) 34	
산	4	∤ 사업연도소득금액 (⑩+⑯-⑯)	06 20	000 071	(B) M B 35	
_					(5)	
	108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⑩=⑩)	20	09 671 000	토지(1) 산 출 세 액 36	
	(109 O	이 월 결 손 금	07 2	000 000	등 양 (세 감 면 세 액 37 도 소	
2	(1)) H	비 과 세 소 득	08		도 소 득에 (@ 차 감 세 액 ((M-(M)) 38	
표	(II) 소	는 득 공 제	09		대한 🚯 공 제 세 액 39	
계·	(B) 괴	바 세 표 준 (® - ® - 10 - 11)	10 20	07 671 000	법 인(4) 동업기업 법인세 배분액(가산세 제외) 58	
		(file - file - file - file)			세 像 가산세액(동업기업 배분액 포함) 40	
	①59 선	선 박 표 준 이 익	55		계산 (4) 가 감 계((10) - (13) + (14) + (16) 41	
	(13) 과	세 표 준(⑪+⑮)	56 20	07 671 00d	기 🐠 수 시 부 과 세 액 42	
3	(I) M		11	209	(B) () M w 43	
산	⑪ 신		12 21	534 200	시 세 때 게 (@ 100) 44	
산 출 세 액	116	지 점 유 보 소 득 (「법인세법」제96조)	13		94 -	
액	(II) AI		14		③ 차감납부할세액 (⑭-⑭)45	
계 산	® 산		15		டு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59	
신	① <u></u> 한		16 21	534 200	© I W M B 60	
		-			환 류 llß 산 출 세 액 61	
	⑩ 산		21	534 200	소 득 (B) 가 산 세 액 62 법 인	
	¹²⁰ 최 공	저한세 적용대상 : 제 감 면 세 액	17	250 000	세 66 이 자 상 당 액 63	
	⑫ 차		18 21	284 200	(B) 납부할세액((B)+(B)+(B)) 64	
	② 최	저한세 적용제외 : 제 감 면 세 액	19			
(A)	<u></u> ② 가		20	90 000	⑤ 차 감 납 부 할 세 액 계 46 (® +®)+®)	374 200
④ 납부:	(25 가		21 21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57 경정 세 액 공 제	
할		(26) 중 간 예 납 세 액	22 18	000000	② (\$\text{is} - (\text{is} - (\text{is}) - (
세 액		コー コー	23		세 ⑤ 현 금 납 부 48	
계		내 (2) 원 천 납 부 세 액	24 3	000 000	w 분 납 할 <u>명 및 (유</u>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계 산	기납 부	한 (10 수 시 부 과 세 액 10 2	25		액 본 납 할 ⑤ 계 (⑤ + ⑤) 50	
	부 세 액	에 ③ 소 (②+②+②+②+②)	OH	000 000	계 ⑮ 현 금 납 부 51	374 200
		((전) + (전) + (전) + (전)	27		⑤ 물 납 52	
		(3) 합 계((3)+(3))		000 000	차감납부세액 (B) 기 (B) +(B) (10) =(B)-(B) (B) 53	374 200
					(400 — (400—1400)	

 $2023 \cdot 03 \cdot 08$ www.taxpark.com 59

20. 2022. 12. 31일자 법인결산과 세무신고를 위한 국세청 고시 회계·세무환율(재정환율)

통 호	£1 (O. 1880 20 01)		고 시	환 율	비고
중 5	화(Currency)		2021. 12. 31. 현재	2022. 12. 30. 현재	비고
미 국	달러	USD	1185.50	1267.30	
일 본	엔	JPY	1030.24	953.18	100엔당
유 로	유로	EUR	1342.34	1351.20	
(독 일)	마르크	DEM	EUR통화	EUR통화	
(프랑스)	프랑	FRF	"	"	
(이탈리아)	리라	ITL	"	"	
(벨기에)	프랑	BEF	"	"	
(오스트리아)	실링	ATS	"	"	
영 국	파운드	GBP	1600.25	1527.67	
캐나다	달러	CAD	930.61	935.38	
스위스	프랑	CHF	1297.47	1372.87	
홍 콩	달러	HKD	152.03	162.55	
스 웨 덴	크로네	SEK	131.04	121.17	
호 주	달러	AUD	858.89	858.41	
덴 마 크	크로네	DKK	180.48	181.70	
싱 가 폴	달러	SGD	877.14	943.11	
중 국	위안	CNH	186.26	181.44	
인도네시아	루피아	IDR	8.31	8.09	100루피아당
태 국	바트	THB	35.57	36.66	
쿠웨이트	디나르	KWD	3918.75	4139.20	
말레이시아	링기트	MYR	283.85	286.49	
노르웨이	크로네	NOK	134.29	128.12	
뉴질랜드	달러	NZD	809.64	804.23	
사우디아라비아	리알	SAR	315.76	337.07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디르함	AED	322.75	345.06	
바 레 인	디나르	BHD	3144.23	3361.27	

[※] 외화자산·부채평가 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전일의 거래실적에 의하여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한 환율을 말함

· 기준환율 : 미화의 외국환은행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환율

· 재정환율 : 미화이외의 통화와 미화와의 매매중간율을 기준환율로 재정한 환율

[⇒]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환율조회')에서 조회 가능

21.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 ① 재무상태표
- ② 2022. 1. 1~12. 31

	표준대차대조표 (일반법인용) (단위 : 원)									
		(월반	합인공)		(ゼカ・ゼ)					
사업자등록번호	101-81	-12345	법인명	(2)	안 건					
사업연도	2022. 1. 1~12. 31		열긴경	(T)	한 신					
계정과목	코드	금액	계정과목	코드	금액					
I. 유동자산	01	182,000,000	I. 유동부채	229	113,000,000					
Ⅱ. 비유동자산	80	388,000,000	Ⅱ. 비유동부채	284	8,000,000					
			부채총계(Ⅰ+Ⅱ)	333	121,000,000					
			Ⅲ. 자본금	334	100,000,000					
			IV. 자본잉여금	337	78,000,000					
			V. 이익잉여금	348	310,000,000					
			VI. 자본조정	372	△39,000,000					
			자본총계(Ⅲ+Ⅳ)	382	449,000,000					
자산총계([+ [])	333	570,000,000	부채와 자본총계	383	570,000,000					

① 2022. 1. 1~12. 31

	표준대차대조표									
		(일반	법인 용)		(단위 : 원)					
사업자 등록 번호	101-81	-12345	법인명	(2)	·····································					
사업연도	2022. 1. 1~12. 31		월신경	(干)	친 신					
계정과목	코드	금액	계정과목	코드	금액					
I. 유동자산	01	188,000,000	I. 유동부채	229	108,000,000					
Ⅱ. 비유동자산	80	552,000,000	Ⅱ. 비유동부채	284	33,000,000					
			부채총계([+ [])	333	141,000,000					
			Ⅲ. 자본금	334	100,000,000					
			IV. 자본잉여금	337	78,000,000					
			V. 이익잉여금	348	485,000,000					
			VI. 자본조정	372	△64,000,000					
			자본총계(Ⅲ+Ⅳ)	382	599,000,000					
자산총계([+ [])	333	740,000,000	부채와 자본총계	383	740,000,000					

- ② 세무조정결과 소득증가로 손익미계상 법인세 등은 다음과 같음.
- · 법인세 500,000원 · 지방소득세 40,000원
- ③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은 다음과 같음.
- · '03년 1월~12월 4,000,000원('04~'05년에 3,500,000원을 공제하였으며, 미공제액 500,000원이 남아있음)
- ④ 전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 기말잔액과 당기 소득금액 조정내역

2023 · 03 · 08 www.taxpark.com 61

	자본금과 적립금	당기소득금액 조정합계표						
과목 또는 사항	조정계산서(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전기말금액	금 액	처 분	금 액	처 분			
공사수입조정	5,000,000	3,500,000	유 보	5,000,000	유 보			
접대비한도초과		5,000,000	기타사외유출					
외화평가차손	4,000,000	200,000	유 보					
가지급금인정이자		900,000	상 여					
건설자금이자	800,000	100,000	유 보					
중소기업투지준비금한도초과	2,200,000			1,000,000	유 보			
퇴직금여충당금한도초과	300,000	900,000	유 보					
대손충당금한도초과	700,000			700,000	유 보			
재고자산평가감	400,000	600,000	유 보	400,000	유 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감가상각비 부인액	3,000,000			2,000,000	유 보			
토지취득세	260,000	240,000	유 보					
벌과금		270,000	기타사외유출					
법인세 등		3,300,000	기타사외유출					
계	16,660,000	15,010,000		9,100,000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 작성요령》

71 P	フレテスレの山	당기중	의 증감	71017101	スレイテレコエリコ
과 목	기초잔액	감 소	증 가	기말잔액	작성참고자료
자 본 금	직전기 본표상의 기말잔액	감 자	증 자	기말 B/S상 잔액	재무상태표
자본잉여금	"	당기감소액	당 기 발 생 액	기말 B/S상 금액	"
이익잉여금	"	"	당 기 발생액	"	"
자본조정계정	"	"	"	"	"
자본금과 적립금조정 명세서(을)계	"	감소총액	증 가 총 액	기 말 잔 액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
손금미계상 법인세 등	"	당기납부	당 기 미계상액	좌 동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당초 계상액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 작성요령》

과목	기초잔액	당기중의 증감		기말잔액	작성참고자료
기조선곡		감 소	증 가		
제좌	직전기본표상 의 기말잔액	○전기 익금산입분중 익금불산입 유보 ○전기 손금불산입분중 손금 산입 유보 ○전기손금산입(△)분중손금 불산입유보(△)	○ 익금산입 유보(+) ○ 손금불산입유보(+) ○ 손금산입유보(△)	기초잔액 – 당기감소 + 당기증가	소득금액 조 정합계표중 유보처분 금
		○전기 익금불산입(△)분중 익금산입유보(△)	○ 익금불산입유보(△)		액

[별지 제50호서식(갑)] <2012.2. 개정>

[별지 제50호서식(갑)] <2012.2. 개정>																
ды 2022.1.1								법인	<u>민</u> 명		(주)안건					
산업 2022.12.31 2022.12.31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성명/	J명세서(갑)			사업자등	h업자등록번호 1e		101-81-12345				
Ι.	I.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서															
①과목 또는 사항				코드	②기초잔액			당 기 중 증 7 ③감 소 ④		등 증 Z ④	(5)/ =		한 앤	비	고	
잡	1. 7			금	01		100,000,000				100,C		00,000			
吉	2. 7	나 본	잉 여	금	02		78,000,000						78,C	00000		
자보내 및 이용기 띄어 계산	3. 7	다 본	조	정	15		39,000,000				△25,	000,000	△64,0	00,000		
별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6											
	5. C	5. 이 익 잉 여		금	14		310,000,000				175,000,000		485,000,000			
계		/ JI			00	440,000,000			150		000 000 500		00.000			
	6. ロココ			ЭП	20	16,660,000		-			540,000					
7. 시 손익	7. 자본금과 적립금명세서(을) 계 손익 8. 법 인			세	22	+	10,000,000		9,10	0,000	500,00			00,000		
고 - 미계상 법인세	9. 2		<u>-</u> 민	 세	23							40,000		40,000		
등			8+9)	30						540,000	540,00					
11. 치		 가 감	계(6-	F7−10)	31		465,660,000	5,660,000 9,100,000 1		155,	000,000	611,560,000				
Ⅱ. 0	기월결	손금 계산서														
1. 0 -	월결손	금 발생 및														
6)				월결손금	3				감 소 내 역			격	잔		액	
⑥ 사업 연도	7	발 생 액 ⑦계 ⑧일반 ⑨배는 결손금 결손금					(1) 제 차감계	(2 기· 제') 공 액	③ 당기 공제액	(4) 보전	(5) 계	〔6 기한 L	배 기한		18 계
'01.1	4,000,	000 4,000,0			20)		4,000,000			0 1		3,500,000		500,0	00	500,000
-"																
계 2 H	4,000,		H E OL 74	ᇫᄀᄱ		71010=	4,000,000			12104 1		3,500,000		500,0		500,000
		있는 경우														글)이 포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포함된 이월결손금 사업연도별 구분											
<u> </u>	9)	20	21)		22				배분한도 초과결원		과결손	ļ.		您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 이월결손금 해당액 (⑧일반결손금으로 계		업연도
법인	인세	동업기업 과세연도 종 료 일	손금산입 배분한5	한 - -		1	합 합 계	200		②5 이월결손금		0				
사업	고 연도			라 ㅣ 丿	나업연 결 손	도	(23=22=	이월	(24) 이월결손금 발생			(25 = 9)		상)		-
			- '	2		25+26)	사업	사업연도		②과② 중 작은것에 상당하는 금액		핵` " 21	②)≧20의 경우는 "0",]<20의 경우는 20-			
												(21)				
				+												
Ⅲ.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자본금과 적립금 기초금액 수정																
<u> </u>	②과목 또는 사항 ③과목 또는 사항								30기초금액 수정		(29+3) (29+3)		30) 32日 고			
@ 11 <u>1</u> 2 10					_				W'I-D TO		- We . 697			<i>→</i> 1		
				1												

 $2023 \cdot 03 \cdot 08$ www.taxpark.com 63

[별지 제50호 서식(을)]

[글시 제50호 시구(글/]										
사 업 2022. 1. 1. 연 도 2022. 12. 31. 자본	법	인 명 (주)	안 건							
X 관리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세무조정유보소득계산										
	② 기초잔액 -	당 기 중	중 증 감	⑤ 기말잔액	비고					
① 과목 또는 사항		③ 감 소	④ 증 가	(익기초현재)						
공 사 수 입	5,000,000	5,000,000	3,500,000	3,500,000						
외 화 평 가 차 손	4,000,000		200,000	4,200,000						
건 설 자 금 이 자	800,000		100,000	900,000						
중 소 기 업 투 자 준 비 금 한 도 초 과	2,200,000	1,000,000		1,200,000						
퇴 직 급 여 충 당 금 한 도 초 과	300,000		900,000	1,200,000						
대 손 충 당 금 한 도 초 과	700,000	700,000		0						
재 고 자 산 평 가 감	400,000	400,000	600,000	600,000						
(유형)감 가 상 각 비 부 인 액	3,000,000	2,000,000		1,000,000						
토 지 취 득 세	260,000		240,000	500,000						
계	16,660,000	9,100,000	5,540,000	13,100,000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 재정환율

	통 화	명	2월 24일(금)	2월 27일(월)	2월 28일(화)	3월 2일(목)
	달	러 (USD)	1299.60	1300.50	1317.40	1319.20
일	본	엔 (JPY)	965.78	953.69	967.36	969.39
영	국 파 운	드 (GBP)	1561.99	1553.84	1589.31	1586.60
711	나 다 달	러 (CAD)	959.40	955.97	970.57	970.39
홍	콩 달	러 (HKD)	165.63	165.71	167.94	168.08
위	안	화 (CNH)	188.26	187.76	188.79	189.40
유	로	화 (EUR)	1377.45	1371.90	1397.76	1407.59
호	주 달	러 (AUD)	885.09	875.50	887.80	891.45
싱	가 폴 달	러 (SGD)	968.22	963.15	978.13	982.90
말리	베이시아링7	I트 (MYR)	293.10	293.20	294.16	294.96